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 2024년도 예산안 개요

##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을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한 교권보호 강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등 미래형 디지털 기반 교육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으로 설정한 바,
-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①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②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학습상담' 지원과, ③서울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문항개발 및 평가를 시행하며,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한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①11개 교육지원청의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②'학교자문변호사제(1교 1변호사)' 도입 및 녹음가능전화 시스템 구축, ③서울형 '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사업을 운영하고, ④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법률지원 및 보상범위 확대를 위해 교원안심공제회비를 편성하였으며,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등 미래형 디지털기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①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스마트기기(디벗) 보급, ②전자철판 확대 설치, ③디지털튜터 배치 및 학교정보화지원 체계구축 예산을 편성하였고,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①학교 신·증설 및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②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③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환경 개선비용 지원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 2. 예산안 편성규모

- '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1,605억 3,600만원으로 '2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된 최종예산인 13조 5,537억 3,600만원보다 △17.6%, △2조 3,931억 9,900만원 감소된 규모임

〈표 1-1〉 2024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A)	2023년도 예산안			
		본예산 <sup>주1)</sup>	최종예산 (B)	증감액 (D=A-B)	증 감 륜 (D/A)
예 산 액	11,160,536	12,891,521	13,553,736	△2,393,199	△17.6

※ 주1) '23년도 본예산 대비 △13.4%, △1조 7,309억 8,400만원 감액

## 3. 예산안 개요

###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규모

- '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1조 1,605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12조 8,915억 2,100만원) 보다 △13.4%, △1조 7,309억 8,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나, 금년도 최종예산(13조 5,537억 3,600만원) 과 비교하면 △17.6%, △2조 3,931억 9,9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 세입예산은 ①이전수입 10조 6,337억 3,700만원, ②자체수입 1,345억 1,700만원, ③기타(전년도 이월금, 금융자산회수) 622억 8,100만원, ④내부거래(전입금) 3,300억원을 편성하고,
- 세출예산은 ①인건비 7조 956억 800만원, ②경상비 1조 362억 7,800만원, ③교육·시설사업비는 3조 85억 9,700만원, ④재무활동(일시차입금이자비용)

은 5,200만원, ⑤예비비 및 기타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 세입예산

□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7.6\%$ ,  $\Delta 2$ 조 3,931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1조 1,605억 3,600만원임

○ **이전수입**은 '2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의 95.2%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1.4\%$ ,  $\Delta 1$ 조 3,763억 3,400만원 감소한 10조 6,337억 3,700만원으로,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조 5,500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9.7\%$ ,  $\Delta 7,071$ 억 5,400만원 감소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721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4.0\%$ ,  $\Delta 6,681$ 억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114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8.4\%$ ,  $\Delta 10$ 억 6,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의 1.2%에 해당되며 자산 및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33.4\%$ ,  $\Delta 674$ 억 9,400만원 감액된 1,345억 1,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는 세입예산의 0.5%에 해당되며 전년도 이월금 편성액 감소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Delta 95.3\%$ ,  $\Delta 1$ 조 2,793억 7,000만원 감소한 622억 8,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내부거래**는 세입예산의 2.9%에 해당되며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의 전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출재원을 확보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3,300억원을 전입받아 세입에 편성한 것임

〈표 1-2〉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년 도		2 0 2 3 년 도		증 감	증감률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합	계	11,160,536	100.0	13,553,736	100.0	△2,393,199	△17.6
이	전 수 입	10,633,737	95.2	12,010,072	88.6	△1,376,334	△11.4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6,550,078	58.6	7,257,232	53.5	△707,154	△9.7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072,172	36.4	4,740,286	34.9	△668,113	△14.0
	기 타 이 전 수 입	11,486	0.1	12,553	0.1	△1,066	△8.4
자	체 수 입	134,517	1.2	202,011	1.4	△67,494	△33.4
기	타	62,281	0.5	1,341,651	9.8	△1,279,370	△95.3
	전 년 도 이 월 금	61,451	0.5	1,324,990	9.7	△1,263,539	△95.3
	금 융 자 산 회 수	830	0.0	16,661	0.1	△15,831	△95.0
내	부 거 래	330,000	2.9	0	0.0	330,000	순증
	전 입 금	330,000	2.9	0	0.0	330,000	순증

### (3) 세출예산

#### 1) 총계규모

□ '24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3년도 최종예산 보다  $\Delta 17.6\%$ ,  $\Delta 2$ 조 3,931억 9,900만원이 감액된 11조 1,605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 성질별 자원 배분

○ **인건비**는 '24년도 세출예산의 63.5%, 7조 956억 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9%, 2,002억 3,5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 ①공·사립 교직원 보수인상률(2.5%) 적용 및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②계약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 반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 종료에 따른 증액분, ③사립교원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 감액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경상비**는 '24년도 세출예산의 9.2%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Delta 3.6\%$ ,  $\Delta 389$ 억 4,200만원 감액된 1조 362억 7,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23년도에는 공공요금·물가 인상,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으로 공·사립 학교운영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나, '24년도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 미편성 등으로 '23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비**는 '24년도 세출예산의 26.9% 규모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Delta 26.1\%$ ,  $\Delta 1$ 조 625억 4,300만원 감액된 3조 85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교육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14.3%, △3,734억 2,900만원 감액된 2조 2,256억 5,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대비 다수 사업 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대안교육지원기관 지원, 원격교육지원(스마트기기 보급, 전자철판 설치),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46.8%, △6,891억 1,300만원을 감액한 7,829억 3,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학교신·증설, 급식 시설 신축,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물량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재무활동**은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1조 3,844억 3,900만원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금년도에는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315억원)’,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329억 3,900만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1조 1,200억원)’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나, ’24년도에는 일시차입금 이자비용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84.3%, △1,075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2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금년도의 경우, ’23년 7월,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액(460억 5,900만원)’ 과 ‘내부유보금(6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 200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1-3〉 세출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최종예산	구성비		
합계	11,160,536	100.0	13,553,736	100.0	△2,393,199	△17.6
인건비	7,095,608	63.5	6,895,372	50.8	200,235	2.9
공무원	4,609,044	41.3	4,469,070	32.9	139,974	3.1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165,491	10.4	1,114,800	8.2	50,691	4.5
사립학교	1,321,071	11.8	1,311,501	9.6	9,569	0.7
경상비	1,036,278	9.2	1,075,220	7.9	△38,942	△3.6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9,286	0.2	39,363	0.2	△76	△0.1
학교운영비	996,991	8.9	1,035,857	7.6	△38,865	△3.7
사업비	3,008,597	26.9	4,071,141	30.0	△1,062,543	△26.1
교육사업비	2,225,658	19.9	2,599,088	19.1	△373,429	△14.3
시설사업비	782,939	7.0	1,472,052	10.8	△689,113	△46.8
재무활동	52	0.0	1,384,491	10.2	△1,384,439	△100.0
지방채상환등	52	0.0	52	0.0	0	0.0
기금전출금	0	0.0	1,384,439	10.2	△1,384,439	순감
예비비 및 기타	20,000	0.1	127,510	0.9	△107,510	△84.3



## II.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2024년도 예산안의 특징

#### (1) 세입예산 검토개요

- '24년도 세입예산안은 11조 1,605억 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총 세입규모가 △17.6%, △2조 3,931억 9,900만원 축소된 바,
  
- 전체 세입의 95.2%에 해당하는 이전수입의 경우, 금년도 12조 100억 7,200만원보다 △11.4%, △1조 3,763억 3,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교육부와 서울시의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였고,
  -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확정이 늦어져 전년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여 제출 하고,
  - 유아수 감소로 인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감소, 서울시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 감소 등의 사유로 이전수입 총액이 금년도 보다 감액된 것으로 사료됨
  
- 기타(전년도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95.3%, △1조 2,793억 7,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23년도 대비 전년도 이월금의 예산반영 규모가 크게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확인됨

○ 내부거래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3,300억원이 증액(순증)된 것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비특별회계가 90%이상의 재원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대내외적 세입여건 변화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재원이 감소되어 지방교육재정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어 교육사업의 지속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출금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2-1〉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외부재원의존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최종(본)예산액(A) <sup>주1)</sup>		11,281,084	12,202,396	14,373,020	13,553,736	11,160,536
이전수입총액(B)		10,187,781	11,320,594	13,724,571	12,010,072	10,633,737
외부재원의존도(B/A)		90.3	92.7	95.5	88.6	95.2

※ 주1) 2020년도~2022년도(결산확정액), 2023년도(최종예산액), 2024년도(본예산편성액)

## (2) 세출예산 검토개요

- '24년도 세출예산은 11조 1,605억 3,600만원을 편성한 바,
  - '24년도 세출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감소,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7.6\%$ ,  $\Delta 2$ 조 3,931억 9,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다수의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이 축소된 반면,
    - 예산총액 중 인건비(7조 956억 800만원), 학교운영비(9,969억 9,100만원) 등의 경직성 경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2%, 1,612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보수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증가를 반영한 편성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24년도 중점사업인 ①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②미래교육기반 구축, ③기초학력 내실화, ④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한하여는 예산편성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3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가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3년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세수감소로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중  $\Delta 9,131$ 억 8,700만원이 감액 통보된 바 있고, '24년도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이전재원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제2조 계속비사업,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명시이월사업,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제6조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제7조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명시이월(제4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24년도는 금년도보다 △219건, △857억원 감소된 458건, 2,402억 6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채발행 한도액(제5조)**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2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1조 1,955억 5,400만원으로 산정하여 교육부에 통보하고 '24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24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일시차입금(제6조) 최고액**은 '2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의 10%인 1조 1,160억 5,300만원으로 설정하여 제출된 바,
  - 일시차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20년 이후) 일시차입금이 운용된 사례는 없음
  
- **예산의 전용(제7조)**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3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중 제7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전용의 조건을 열거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용(제8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각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바,
  -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공무원 보수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중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목적지정지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단서를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3.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1조 1,605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3조 5,537억 3,600만원) 대비 △17.6%, △2조 3,931억 9,9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표 2-2〉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전 년 대 비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합	계	11,160,536	100.0	13,553,736	100.0	△2,393,199	△17.6
이	전 수 입	10,633,737	95.2	12,010,072	88.6	△1,376,334	△11.4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6,550,078	58.6	7,257,232	53.5	△707,154	△9.7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6,079,561	54.4	6,723,430	49.6	△643,869	△9.6
	보 통 교 부 금	5,903,438	52.8	6,362,252	46.9	△458,814	△7.2
	특 별 교 부 금	0	0.0	198,425	1.4	△198,425	순감
	증 액 교 부 금	176,123	1.5	162,753	1.2	13,370	8.2
	국 고 보 조 금	19,796	0.1	43,301	0.3	△23,505	△54.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50,720	4.0	490,500	3.6	△39,779	△8.1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072,172	36.4	4,740,286	34.9	△668,113	△14.0
	법 정 이 전 수 입	4,032,458	36.1	4,485,693	33.0	△453,235	△10.1
	지 방 세 수 입	3,886,607	34.8	4,343,872	32.0	△457,265	△10.5
	학교용자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0.0	1,987	0.0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861	1.0	114,151	0.8	2,709	2.3
	교육급여보조금	10,491	0.0	10,424	0.0	66	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11	0.1	15,258	0.1	1,253	8.2
	비 법 정 이 전 수 입	39,714	0.3	254,592	1.8	△214,878	△84.4
	기 타 이 전 수 입	11,486	0.1	12,553	0.0	△1,066	△8.4
자	체 수 입	134,517	1.2	202,011	1.4	△67,494	△33.4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520	0.0	1,294	0.0	226	17.5
	행 정 활 동 수 입	5,597	0.0	5,305	0.0	291	5.4
	자 산 수 입	8,875	0.0	30,851	0.2	△21,976	△71.2
	이 자 수 입	11,819	0.1	36,410	0.2	△24,590	△67.5
	기 타 수 입	106,704	0.9	128,150	0.9	△21,445	△16.7
기	타	62,281	0.5	1,341,651	9.8	△1,279,370	△95.3
	전 년 도 이 월 금	61,451	0.5	1,324,990	9.7	△1,263,539	△95.3
	금 용 자 산 회 수	830	0.0	16,661	0.1	△15,831	△95.0
내	부 거 래	330,000	2.9	0	0.0	330,000	순증
전	입 금	330,000	2.9	0	0.0	330,000	순증

(1) 중앙정부이전수입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5조 9,034억 3,800만원으로, 교육부가 전체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재원의 9.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금년도 본예산 확정교부액(6조 3,622억 5,200만원)과 비교하여 △7.2%, △4,588억 1,4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교육부가 '23년 9월, 내국세 수입 감소를 사유로 '23년도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안(△9,131억 8,700만원)을 통지함에 따라, 최종적인 보통교부금 규모는 5조 4,490억 6,500만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교부될 보통교부금과 비교하면 8.3%, 4,543억 7,300만원 증액된 규모로 검토됨

〈표 2-3〉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육부 재원규모 (A)	2024년도		2023년도			확정교부액대비	
		예정교부액 (B)	구성비 (B/A)	확정교부액 <sup>주1)</sup> (C)	감액예상액 <sup>주2)</sup>	최종교부 예상액	증감액 (D= B-C)	증감률 (E=D/ C)
보통 교부금	65,235,693	5,903,438	9.0	6,362,252	△913,187	5,449,065	△458,814	△7.2

※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45('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주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333 ('23. 9.21),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관련 협조요청 사항”

○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23년도에 이어 '24년도의 경우에도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교육부는 '24년도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금년도보다 △6조 6,493억원 감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23년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세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50%(△2조 2,414억원)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성되고,

- '22년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 확정으로 인한 '22년도 정산분(△346억 4,600만원)을 '24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감액한 것도 지방교육재정 감소요인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당초 1조 1,20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차기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23년도 보통교부금 감액(△9,131억 8,700만원) 협조요청에 따라 금년도 10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기금의 수입계획중 교육비특별회전입금(△9,200억원)과 이자수입(△251억 7,000만원)을 기정(1조 6,108억 2,300만원) 대비 △58.7%, △9,451억 7,000만원 감액하고 지출계획도 이와 연동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 바, '24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10조 3,690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1.9%, △1조 4,101억 1,000만원 감소한 것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4조 4,656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7.5%, △9,512억 9,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4〉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sup>주1)</sup>	2023년도 <sup>주2)</sup>	증 감	증 감 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① - ②)	5,903,438	6,362,252	△458,814	△7.2
기 준 재 정 수 요 액	①	10,369,054	11,779,165	△1,410,110	△11.9
기 준 재 정 수 입 액	②	4,465,615	5,416,908	△951,292	△17.5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687('23.10.16),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주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45('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 기준재정수요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 금년도 보다 △1조 4,10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0조 3,690억 5,400만원으로 산정된 바,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중 학교운영비 단위비용 상승, 배려계층 지원 산정방식 변화, 학교 신·증설비 등의 증가로 ‘학교운영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기관 등 시설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 교직원 수 감소로 교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3년도에는 적용하였던 교육부의 재정안정화지원(1조 5,762억 4,700만원)도 미반영되어 기준재정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방안’(’23. 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교육비특별회계’의 유아학비고시금액 외에도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4년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만 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액(인당 월 5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있어 향후 교육재정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노력수요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200억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56억 4,600만원)가 증액 반영되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2년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률·불용률 관련 패널티로 △150억원이 감액 반영되어 2년 연속 감액 산정된 바, 향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률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24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세부 산정현황

(단위 : 백만원, %)

측정항목	2024년도 예정교부액	2023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감률	산 정 내 용
합 계	10,369,054	11,779,165	△1,410,110	△11.9	
교직원인건비	6,448,738	6,605,050	△156,312	△2.3	○ 교원인건비 감소
학교운영비	2,108,775	1,963,079	145,695	7.4	○ 학교·학급·학생경비 ○ 단위비용 상향 조정
교육행정비	102,848	103,316	△467	△0.4	
교육복지지원비	328,046	264,059	63,986	24.2	○ 배려계층 지원 산정방식 절대량 기준 개선으로 증가
교육기관 등 시설비	943,030	873,711	69,318	7.9	○ 학교교육환경개선비 ○ 학교신·증설비 증가
유아교육비	113,409	86,749	26,659	30.7	○ 유아교육바보육료 지원비(5세 추가 지원분) 수요 반영
방과후학교 사업비	91,236	84,515	6,721	7.9	○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초등 돌봄 지원 증가
고교무상 교육지원비	191,568	178,011	13,557	7.6	
재 정 결 함 보 전	30,755	1,619,556	△1,588,801	△98.1	○ 재정안정화지원 수요 미반영
자 체 노 력 수 요	10,646	1,115	9,530	854.2	○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증가 ○ 재정집행효율화지원 <sup>주1)</sup> 150억원감액

주1) '24년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률·불용률 관련 패널티 기준재정수요액△150억원 감액

○ 기준재정수입액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에 따라 금년도(5조 4,169억 800만원) 보다 △9,512억 9,200만원 감소한 4조 4,656억 1,500만원으로 산정된 바,

- 기준재정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24년도 91.4%)을 차지하는 지방세액의 경우 전전년도('22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20~'22년도)간의 평균 증감률과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어, 금년도 기준재정수입 대비 △19.2%, △9,734억 8,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국세 및 지방세에 연동되는 방식의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으로 인해 교육부 예정교부통지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①당해연도 확정교부액 통지에 의한 조정, ②전년도 결산액에 따른 정산 차액 교부, ③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교부금 증액 편성, ④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 알림 등 정부로부터 연중 수회의 교부액 증감 통보가 발생하고 있는 바,

- 보통교부금의 경우, 지난 '21년도에는 8,545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22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액의 44.5%에 달하는 2조 3,376억원이 회계연도 중에 증액 교부되었으며, '23년도에는 세수감소를 사유로 △9,131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될 예정임이 통보됨에 따라 교육재정에 대한 유동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사료됨

〈표 2-6〉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산 편 성 액 ( A )	보 통 교 부 금 추 가 편 성 현 황			최 종 예 산 편 성 액 ( B )	본 예산 대비	
		확정교부 추 가 분	지난연도 정 산 분	추경편성 추 가 분		증 감 액 (C=B-A)	증감률 (C/A)
2023년	6,390,221	△27,403	-	-	5,449,065 (△913,187) <sup>주1)</sup>	△94,059	△14.7
2022년	5,251,973	394,558	628,762	1,314,295	7,589,589	2,337,615	44.5
2021년	4,933,216	31,169	84,403	738,958	5,787,747	854,530	17.3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333 ('23. 9.21),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관련 협조요청 사항”

※ 자료근거 : 2020~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표 2-7〉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측 정 항 목	2024년도 예정교부액	2023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 감 률
보통교부금 ( ㉠ - ㉡ + ㉢ )	5,903,438	6,362,252	△458,814	△7.2
기 준 재 정 수 요 ㉠	10,369,054	11,779,165	△1,410,110	△11.9
교 직 원 인 건 비	6,448,738	6,605,050	△156,312	△2.3
학 교 운 영 비	2,108,775	1,963,079	145,695	7.4
교 육 행 정 비	102,848	103,316	△467	△0.4
교 육 복 지 지 원 비	328,046	264,059	63,986	24.2
교 육 기 관 등 시 설 비	943,030	873,711	69,318	7.9
유 아 교 육 비	113,409	86,749	26,659	30.7
방 과 후 학 교 사 업 비	91,236	84,515	6,721	7.9
고 교 무 상 교 육 지 원 비	191,568	178,011	13,557	7.6
재 정 결 함 보 전	30,755	1,619,556	△1,588,801	△98.1
자 체 노 력 수 요	10,646	1,115	9,530	854.2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20,000	6,000	14,000	233.3
학교 신설 민관협력 확대	-	-	-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5,646	5,115	530	10.3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이월및불용률)	△15,000	△11,000	△4,000	36.3
재정집행효율화지원(상반기예산집행비율)	0	1,000	△1,000	순감
재 정 집 행 효 율 화 지 원 ( 순 세 계 잉 여 금 예 산 편 성 비 율 )	-	-	-	-
기 준 재 정 수 입 ㉡	4,465,615	5,416,908	△951,292	△17.5
법 정 전 입 금	4,270,131	5,238,897	△968,765	△18.4
지 방 교 육 세	1,788,786	2,339,602	△550,816	△23.5
시 도 세	2,024,201	2,417,080	△392,878	△16.2
담 배 소 비 세	272,529	302,322	△29,793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861	114,151	2,709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정산분)	6,959	4,808	2,150	44.7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	36,209	36,209	0	0.0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24,722	24,722	0	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778	-	3,778	
고 교 무 상 교 육 증 액 교 부 금	176,123	162,753	13,370	8.2
고 교 무 상 교 육 전 입 금	15,445	15,258	187	1.2
감 사 결 과 반 영	-	△4	4	순증
정 정 교 부 액 ㉢	-	-	-	-

※ 자료근거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687('23.10.16),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45('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①국가시책사업, ②지역교육현안, ③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인 바,
- '23년도에는 13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1,195억 6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4년도에는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개편에 따라 공문 시달이 지연되어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회계연도 개시이후 특별교부금을 세입 조치하고, 세출예산에 연동시킬 것으로 사료됨

〈표 2-8〉 2024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증감(A-B)	
	사 업 수	편 성 액	사 업 수	편 성 액	사 업 수	편 성 액
특별교부금	0	0	133	119,506	△133	△119,506

- 다만,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활성화에 필요한 시·도분담금 등 대응투자가 필요한 16개 사업, 66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시·도 대응투자 확보 요청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9〉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에 대응투자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국가지원	자체부담	편성근거
합	계	72,872	6,682	
디지털 혁신미래 교육과	원격교육기반구축	404	488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8889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활성화	1,236	1,210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4219
	과학고 운영 지원	20	180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8808
	영재교육내실화 지원	10	90	
유아 교육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0	317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4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사립유치원K-에듀파인 맞춤형 지원	0	477	교육부 초등교육과-15680
초 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0	55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853
	늘봄학교 지원	4,761	1,556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3429
	인공지능초등수학지원시스템 현장 지원	91	58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4094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원과	학생평가·학생부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0	93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770
	교육회복지원	5,930	8,083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84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2,277	2,27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462
진로직업 교육과	진로정보망커리어넷 및온라인진로상담운영	82	61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719
	꿈길및인증제운영비	38	40	
	지역사회창업체험 교육생태계조성	61	50	
	온라인플랫폼 및연계프로그램	59	20	
	진로사회연계진로체험격차해 소프로그램 지원	29	20	
	진로체험활성화 지원	27	10	
	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	71	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3) 증액교부금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4년도에는 1,761억 2,300만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48.0%가 교부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액중 나머지 47.5% 1,742억 8,800만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5%, 165억 1,100만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음

〈표 2-10〉 2024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주체	부담액	부담률	비고
합계	366,923	100.0	
국가	176,123	48.0	○ 증액교부금
교육청	174,288	47.5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
자치단체	16,511	4.5	○ 서울시 50%, 자치구 50% 부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492 ('23. 9.25), "2024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 다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은 '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5년 한시규정인 바, 교육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고등학교 무상교육 잠정액'에 따르면 '25년 이후에는 예정교부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무상교육재정 확보의 불안정성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잠재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자원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예산에서 정하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임
- '24년도 세입예산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4,507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유아수 감소(△10,112명)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8.1%, △397억 8,000만원 감소된 규모로 확인됨
  - 다만, '24년도 예산안에는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른 단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23년 12월 말, “24년도 교육부 고시”가 통보 되면 새로운 단가기준에 따른 증액분을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 요청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1〉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450,720	490,500	△39,780	△8.1%
	유아학비	210,435	209,930	505	0.2%
	보육료 <sup>주1)</sup>	240,285	280,569	△40,284	△14.3%

※ 주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6억 5,000만원이 포함됨

- 아울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경우, 당초 '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나, '22년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25년 12월 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한 바, 향후 존치기한 연장 건의나 재원부담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는 별도로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23.1.30, 교육부·복지부)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만 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액(인당 월 5만원)을 시·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요청한 바,



-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방안'에 따르면 '25년도에는 만 4세, '26년도에는 만 3세에 대한 추가지원을 계획중에 있고, 추가소요재원은 만 5세 지원금과 동일하게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고정지출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됨

## 5) 국고보조금

- '24년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197억 9,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4.2%, △235억 5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2-12〉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국고보조금	19,796	43,301	△23,505	△54.2

-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별도 교부하는 재원으로 4개 사업, 197억 9,600만원을 편성한 바, '24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면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세입·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차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3〉 2024년도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액	편성근거
합	계	19,796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	15,737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5878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58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3430
	초등스포츠강사지원	1,085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3419
	학교흡연예방교육	2,615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281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24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721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교육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상전출금 등에 대한 편성안을 통보 받아 이를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14〉 2024년도 「자치단체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전 년 대 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합	계	4,072,172	4,740,286	△668,113	△14.0
법 정 이 전 수 입		4,032,458	4,485,693	△453,235	△10.1
지 방 세 소 계		3,886,607	4,343,872	△457,265	△10.5
	지 방 교 육 세	1,811,356	1,946,118	△134,762	△6.9
	담 배 소 비 세	257,277	284,423	△27,146	△9.5
	소 계	1,817,974	2,113,329	△295,355	△13.9
	사 도 세				
	시도세(지방세)	1,757,043	1,761,108	△4,065	△0.2
	전년도 정산분	0	291,290	△291,290	
	균특회계시도전환 사업보전분	36,209	36,209	0	0.0
	국가의지방이양 사업보전분	24,722	24,722	0	0.0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1,987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861	114,151	2,709	2.3
	교육급여보조금	10,491	10,424	66	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11	15,258	1,253	8.2
비 법 정 이 전 수 입		39,714	254,592	△214,878	△84.4
서 울 시		15,914	155,345	△139,431	△89.7
자 치 구		23,800	99,247	△75,447	△76.0

#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①지방세수입, ②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③교육급여보조금, ④무상교육경비전입금,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으로 '24년도에는 4조 324억 5,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5〉 2024년도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주체	구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032,458	4,485,693	△453,235	△10.1	
서울시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1,987	0	0.0	
	교육급여보조금	10,491	10,424	66	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11	15,258	1,253	8.2	
	지방세	소계	3,886,607	4,343,872	△457,265	△10.5
		지방교육세	1,811,356	1,946,118	△134,762	△6.9
		담배소비세	257,277	284,423	△27,146	△9.5
		시도세(지방세)	1,757,043	2,052,398	△295,355	△14.3
충청북도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36,209	36,209	0	0.0	
	국가의 지방이양사업보전분	24,722	24,722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정산분포함)	116,861	114,151	2,709	2.3	

○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전입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0.5%, △4,572억 6,500만원 감액된 3조 8,866억 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금년 6월,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전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3,496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출한 것에도 원인이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3조 9,942억 1,700만원)과 비교하여 △1,076억 1,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세 수입도 감액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에 근거한 재정분권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금에 대한 세입과목을 '시도세전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도세와는 목적과 재원이 다르며, 동법 제71조제2항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입내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세입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예산과목 신설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2년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되고, 이를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분 4,380만원을 법정전출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교육청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향후 성립전예산제도를 사용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6〉 2024년도 지방세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 0 2 3 년 도			2 0 2 3 년 도 최종예산대비	
			본 예산 ( B )	최종예산 ( C )	증 감 ( B - C )	증 감 액 ( A - C )	증 감 륜 ( A / B )
합	계	3,886,607	3,994,217	4,343,872	349,655	△457,265	△10.5
지방 교육세	소 계	1,811,356	1,926,002	1,946,118	20,116	△134,762	△6.9
	지방교육세 전입금	1,811,356	1,926,002	1,818,502	△107,500	△7,146	△0.3
	'22년도 정산분	0	0	127,616	127,616	△127,616	-
담 배 소비세	소 계	257,277	261,992	284,423	22,431	△27,146	△9.5
	담배소비세 전입금	257,277	261,992	261,992	0	△4,715	△1.8
	'22년도 정산분	0	0	22,431	22,431	△22,431	-
시도세 전입금	소 계	1,817,974	1,806,223	2,113,329	307,106	△295,355	△13.9
	시세전입금	1,757,043	1,761,108	1,761,108	0	△4,065	△0.2
	'22년도 정산분	0	0	291,290	291,290	△291,290	-
	균특회계시도 전환사업보전분	36,209	36,228	36,209	19	0	-
	국가의지방이양 사업보전분	24,722	8,887	24,722	15,835	0	-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중 시·도의 부담분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19억 8,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2-17〉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학 교 용 지 매 입 비 시 도 부 담 금	1,987	1,987	0	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동법 제 5조의4에 따라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20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 전액을 전출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 6%)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산출된 안분액과 정산분 1,168억 6,100만원을 반영한 것임

〈표 2-18〉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116,861	114,151	2,709	2.3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중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04억 9,100만원을 반영한 것임

〈표 2-19〉 2024년도 「교육급여보조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국 비	지 자 체			계
		시 비	구 비	소 계	
교육급여보조금	15,737	7,343	3,147	10,491	26,228

- ※ 재원분담 : 국고보조금 60%, 광역자치단체 28%, 기초자치단체 12%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0365 ('23. 9.18), “'24년 교육급여 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65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각각 82억 5,500만원이 전입되는 것임

〈표 2-20〉 2024년도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국 가	교육청	지 자 체			계
			시 비	구 비	소 계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76,123	174,288	8,255	8,255	16,511	366,923

- ※ 재원분담 : 국가 48%, 교육청 47.5%, 지자체 4.5% (서울시 2.25%, 자치구 2.25%/25)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492 ('23. 9.25), “'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397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 전입금(159억 1,400만원)과 자치구 전입금(238억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표 2-21〉 2024년도 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2023최종예산대비		비 고
		본 예산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륜	
합 계	39,714	33,905	254,592	△214,878	△84.4	
서울시 전입금	15,914	21,125	155,345	△139,431	△89.7	○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입학준비금) : 159억 1,400만원
자치구 전입금	23,800	12,780	99,247	△75,447	△76.0	○ 입학준비금지원(25개구) : 117억원 ○ 개포도서관건립(강남구) : 121억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 서울시의 조례상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보통세의 0.09%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31억 6,500만원 감액된 159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3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는 일반교육경비 4개 사업, 3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도에는 일반교육경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입학준비지원금 159억 1,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특별교육경비 소요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신고와 지원업무가 '22년 1월부터 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23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소요예산(6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 특별교육경비보조의 경우에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대상학교 선정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완료한 이후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하여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2〉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지 원 대 상
계		15,914	29,079	△13,165	
일반교육경비		-	3,036	△3,036	
1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	600	△600	
2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	660	△660	
3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	1,000	△1,000	
4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	776	△776	
입학준비금		15,914	17,268	△1,354	○ 초·중·고 신입생 195,000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	7,000	△7,000	
특별교육경비		-	1,775	△1,77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 다만, 금년도의 경우, 비법정이전수입은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 산제도를 통해 최종예산기준 2,542억 5,400만원이 추가편성된 바, '24년도의 경우에도 회계연도중 비법정이전수입이 증·감 교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서울시는 교육청과 자원분담에 대해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회계연도중 추가적인 재원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2-23〉 최근 5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편성기준액 <sup>주1)</sup> (A)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통보액 <sup>주2)</sup>		최 종 편 성 액	
		금 액 ( B )	비율(B/A)	금 액 ( C )	비율(C/A)
2 0 2 4	18,443,450	15,914	0.09	-	-
2 0 2 3	18,355,853	27,579	0.15	29,079	0.15
2 0 2 2	16,880,579	51,984	0.31	51,984	0.31
2 0 2 1	14,489,874	47,376	0.33	54,376	0.38
2 0 2 0	14,496,136	53,300	0.37	67,299	0.46

- ※ 주1)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총액
- 주2) 서울시의 조례상전출금 세출예산 편성액 기준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 자치구전입금은 ①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한 25개 자치구 부담금과 ②강남구와의 협약사업인 '개포도서관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위한 전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 입학준비금의 경우, 총사업비 530억 4,700만원(초등 109억 400만원, 중등 421억 4,200만원)중 초등 사업비의 30%, 65억 4,200만원, 중등 사업비의 20%, 210억 7,0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표 2-24〉 2024년도 「입학준비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교 육 청	지 자 체			계	1 인 당 지 원 액
			서울시	자치구	소 계		
계		25,433	15,914	11,700	27,614	53,047	
입 학 준 비 금	초 등	4,361	3,271	3,271	6,542	10,904	20만원
	중 등	21,074	12,642	8,428	21,070	42,142	30만원

※ 재원분담 : (초등) 교육청 40%, 시 30%, 구30%, (중등)교육청 50%, 시 30%, 구 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8685 ('23. 8. 7), "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예산 내역 알림"

- 강남구 전입금의 경우, 강남구와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21. 4.28)에 따라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위한 '24년도 강남구 전출금 121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기타협력사업비로 114억 8,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5〉 2024년도 「기타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 - B)	증감률
합	계	11,486	12,553	△1,066	△8.5
민간이전수입		11,486	8,585	2,901	33.8
	① 기타지원금	8,012	6,126	1,886	30.7
	② 기타협력사업비	3,474	2,459	1,015	41.3
자치단체간이전수입		0	3,957	△3,957	순감
전입금		0	3,967	△3,967	순감

- 기타지원금과 기타협력사업비는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지원금 63억 4,600만원과 ‘서울도신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비용’ 기부채납금 16억 6,500만원, ②농협금고 협력사업비 34억 7,400만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기타지원금중 ‘서울도신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비용’ 기부채납금은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주택조합간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른 것으로 주택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도신초등학교에 대한 증축공사비 총 55억 5,300만원을 3회에 걸쳐 기부채납 받기로 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345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6〉 2024년도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34,517	202,011	△67,494	△33.4
	교수학습활동수입	1,520	1,294	226	17.5
	행정활동수입	5,597	5,305	291	5.4
	자산수입	8,875	30,851	△21,976	△71.2
	이자수입	11,819	36,410	△24,590	△67.5
	기타수입	106,704	128,150	△21,445	△16.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문화강좌교실 수입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7.5%, 2억 2,600만원 증가한 15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행정활동수입**은 '2022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심의' 수수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4%, 2억 9,100만원 증가한 55억 9,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의 토지 임차 및 매각 계획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1.2%, △219억 7,600만원 감소한 88억 7,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기타수입등, 지난연도수입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 △16.7%, △214억 4,500만원 감소한 1,067억 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기타수입등중 ‘**그외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4.9%, △48억 6,700만원 감소한 146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최근 5개년도 자료추계치와 ’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예치금(4억 3,400만원) 및 이자(1,600만원) 회수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21년도에 신설된 교육부 세입예산 과목기준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을 위해 690억 9,8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22년도에 신규편성된 과목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이후 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지난연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금을 위해 217억 3,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년도 최종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에 675억 2,200만원, ‘**보조금등반납금수입**’에 395억 2,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각각 1,011억 1,700만원과 157억 3,700만원을 세입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세입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간 정산을 위한 반납액임에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기타수입)이 확대되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부에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7〉 2024년도 「기타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 A - B )	증 감 률	비 고
합 계	106,704	128,150	△21,445	△16.7	
제 재 금 수입	737	1,134	△396	△35.0	○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변 상금 수입 감소 및 학원 운영 컨설팅으로 과태료 부과 감소
기 타 수 입 등	105,483	126,574	△21,091	△16.7	
그 외 수입	14,650	19,518	△4,867	△24.9	○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 이관 ○ 교육감 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 전비용 등
학 교 회 계 전 출 금 반납금수입	69,098	67,522	1,575	2.3	
보 조 금 등 반납금수입	21,734	39,533	△17,799	△45.0	
지난연도수입	483	441	42	9.6	○ 최근 3개년도 결산액의 평균치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5) 기타

□ 세입예산중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로 622억 8,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8〉 2024년도 「기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62,281	1,341,651	△1,279,370	△95.3
전년도이월금		61,451	1,324,990	△1,263,539	△95.3
	순세계잉여금	61,451	1,321,430	△1,259,979	△95.3
	보조금사용잔액	-	3,559	△3,559	순감
금융자산회수		830	16,661	△15,831	△95.0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 47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23년도 징수전망액과 지출추정액을 근거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 6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9〉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금액 <sup>주1)</sup>	전년대비		다음연도		반영액	
		증감	증감률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3	400,833	△984,511	△71.0	61,451	15.3		
2022	1,321,430	863,222	65.3	1,385,344	104.8	1,321,430	100
2021	458,208	131,899	28.8	324,342	70.8	458,208	100
2020	326,309	△54,833	△16.8	280,604	86.0	326,309	100

※ 주1) 2020~2022회계연도는 결산확정액, 2023회계연도는 결산전망액기준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표 2-30〉 2023회계연도 결산 전망(추정)액

<'23.10.20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 (B) (수납률)	세출 결산액 (C) (집행률)	잉여금차인잔액						
			(B-C)	기존 채무상환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4,238,237	13,280,280 93.3%	12,106,654 85.0%	1,173,625	0	200,353	572,438	0	0	400,8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 ('23.11. 1)

○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23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24년도) 세입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 '24년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23년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항목인 내부유보금에 편성된 1,984억 400만원 전액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편성 요청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감액요청된 내부유보금중 △1,369억 5,300만원은 감액되고, 614억 5,1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둔 바,

- '23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가 도래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된 614억 5,100만원은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어 '24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가 종료되어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동 편성사례의 경우,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결과에 따라 법정정산후 발생하는 세계잉여금과는 발생사유가 다르고 직전회계연도 내부유보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 연동시킨 것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반하는 세입조치 사례로 사료되지 않음

○ **금융자산회수**는 보증금회수(8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노조사무실 중 3개 사무소가 '24년도 이전 예정인 바, 기존 임차보증금 회수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6) 내부거래

- 세입예산중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3,30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기금전입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30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③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라 '23년도말 적립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1〉 2024년도 기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기	금 전 입 금	330,000	-	330,000	순증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7

## 4.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 1)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4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4년도 성인지 예산은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제출한 바,
- 총 31개 사업, 1,704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3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총 39개 사업, 1,911억 5,600만원) 보다 △8개 사업이 감소하였고, 예산액은 △10.8%, △206억 9,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표 2-32〉 성인지 예산 부문별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부 문	사 업 수			2 0 2 4 년		2 0 2 3 년		증 감	
	2024 년도 ①	2023 년도 ②	증 감 ①②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예 산 액 (A - B)	구성비
계	31	39	△8	170,460	100.0	191,156	100.0	△20,695	△10.8
유아및초중등교육	28	32	△4	167,087	98.0	186,301	97.5	△19,214	△10.3
평 생 교 육	1	2	△1	158	0.1	182	0.1	△24	△13.2
교 육 일 반	2	5	△3	3,214	1.9	4,671	2.4	△1,457	△31.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9

- 대상사업의 부문별 편성현황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28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1개(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교육일반** 2개(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주민참여예산운영)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부문별로 성인지 예산이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24년도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는 5개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분야별 편성현황은 총 31개 사업중 24개 사업이 ④'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①'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⑤'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분야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성인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3〉 성인지 예산 정책분야별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정 책 분 야	사업 개 수	2 0 2 4 년		2 0 2 3 년		증 감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예산액(A-B)	구성비
계	31	170,460	100.0	191,156	100.0	△20,695	△10.8
①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	-	-	-
② 모두를 위한 돌봄안전망구축	3	53,032	31.1	64,530	33.8	△11,497	△17.8
③ 폭력피해지원 및 성인지적건강권보장	4	3,898	2.3	4,214	2.2	△315	△7.5
④ 남녀가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확산	24	113,529	66.6	122,411	64.0	△8,882	△7.3
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9

○ '24년도 성인지 예산의 사업분류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교육부지정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분류 모두 사업개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2-34〉 성인지 예산 사업분류별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규모				
	2024년도 ①	2023년도 ②	증감 ① - ②	2024년 예산안(A)	2023년 예산액(B)	증감 (A - B)	증감률	
합계	31	39	△8	170,460	191,156	△20,695	△10.8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	12	△5	45,350	53,056	△6,706	△12.6
	성별영향 평가사업	5	6	△1	18,530	20,149	△1,619	△8.0
	교육부 지정사업	17	17	-	104,336	116,515	△12,179	△10.5
선택	자체선정사업	2	4	△2	1,242	1,443	△191	△1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8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7개 사업중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 전체 이수인원 대비 여성교원의 비율이 76.8%로 전체 여성교원의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남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24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남성교원 26%, 여성교원 74%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사업명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계		46,350	53,056	△6,706	△12.6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운영	1,094	1,215	△120	△10.0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39,484	46,670	△7,185	△15.4
중등교육과	인사관리	4,559	3,251	1,308	40.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56	122	△65	△53.5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스쿨미투여방및학교회복지원	550	603	△52	△8.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	266	-	266	순증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안전망구축	338	1,193	△855	△71.7

-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 이 중 ‘**안전인프라 구축**’(안전총괄담당관) 사업은 교통안전 봉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이용자(모)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 학부모 만족도 75%를 ’24년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6〉 성별영향평가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전 년 대 비	
				증감(A-B)	증감률
계		18,530	20,149	△1,619	△8.0
안전총괄담당관	안 전 인 프 라 구 축	3,357	1,581	1,775	112.3
디 지 털 혁 신 미 래 교 육 과	학 교 혁 신 기 획 운 영	1,478	2,159	△680	△31.5
교 수 학 습 기 초 학 력 지 원 과	중 등 기 초 학 력 향 상 지 원	9,130	10,334	△1,203	△11.6
진 로 직 업 교 육 과	특 성 화 고 지 원	2,209	2,760	△550	△20.0
학 교 지 원 과	적 정 규 모 학 교 육 성 지 원 금	2,355	3,314	△959	△28.9

- **교육부지정사업**의 경우,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17개 사업으로, ’23년도와 비교하여 2개 사업만 예산편성액이 증가한 바,
  - ‘**화장실개선**’(교육시설안전과) 사업은 여학생 변기의 개수가 남학생 변기(대변기+소변기) 보다 적어, 노후 화장실개선 또는 교사동 개축 시 여학생용 변기 개수 설치를 확대하여 노후 학교의 남녀 화장실을 균형 있게 개선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하는 것으로, 학교화장실 여학생 변기 비율을 44%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24년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됨

-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유아교육진흥원) 사업은 '24년도 성인지 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교육동 체험시설 내 성인 남자 화장실을 1개층에 추가로 확충하여(5개층중 2개층만 설치됨) 양성평등한 체험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험시설 내 남성 화장실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남자인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7〉 교육부지정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전 년 대 비	
				증감(A-B)	증감률
계		104,336	116,515	△12,179	△10.5
유 아 교 육 과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2,772	3,124	△351	△11.3
초 등 교 육 과	방과후학교사업지원	10,775	14,735	△3,960	△26.9
중 등 교 육 과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고)	34	55	△21	△38.8
중 등 교 육 과	중 등 교 원 연 수 지 원	2,978	3,363	△384	△11.4
평 생 교 육 과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58	182	△24	△13.2
진로직업교육과	맞춤식진로교육	1,646	1,782	△136	△7.7
진로직업교육과	맞춤형취업기능강화	3,550	11,000	△7,449	△67.7
진로직업교육과	일반고생직업교육지원	185	256	△71	△27.6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201	910	△709	△77.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체 육 관 리	1,225	4,769	△3,543	△74.3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초등스포츠강사인건지원	14,276	14,276	-	-
특 수 교 육 과	특수교육과정지원	650	904	△254	△28.1
교육시설안전과	화 장 실 개 선	61,825	56,865	4,960	8.7
교 육 연 수 원	자 격 연 수	1,109	1,180	△70	△6.0
교 육 연 수 원	전 문 교 육	1,196	1,376	△180	△13.1
학 생 교 육 원	영어체험교육지원	1,042	1,054	△11	△1.1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706	676	29	4.4

- 자체선정사업의 경우, 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2개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강화'(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주민참여예산운영'(예산담당관)만 자체선정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자체선정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전 년 대 비	
				증감(A-B)	증감률
계		1,242	1,433	△191	△13.3
예 산 담 당 관	주민참여예산운영	859	1,357	△498	△36.7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민주시민교육강화	382	76	306	403.3

##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는 바,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한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4년도에 5개의 전략목표, 25개의 성과목표, 79개의 단위과제 및 8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표 2-39〉 2024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예산안 (A)	2023년도 본예산 (B)	증감 (A - B)
성과 계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25	25	-
	성과지표 수	86	91	△5
	단위과제 수	79	80	△1
예산 액	총예산액 (㉠)	11,160,536	12,891,521	△1,730,984
	단위과제예산(㉡)	2,966,643	3,048,539	△81,896
	설정비율(㉡/㉠)	26.5	23.6	2.9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2조 9,666억 4,300만원으로 '23년도(3조 485억 3,900만원)보다 △818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예산액은 8조 1,938억 9,300만원으로 '23년도(9조 8,429억 8,100만원) 보다 △1조 6,490억 8,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40〉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4년도 예산안 ( C )	'23년도 본예산 ( D )	증 감 ( C - D )	재원비중
총 계	( A + B )	11,160,536	12,891,521	△1,730,984	100
성과관리 대상사업	소 계 ( A )	2,966,643	3,048,539	△81,896	26.5
	전략목표 I	269,360	440,077	△170,716	2.4
	전략목표 II	864,485	888,436	△23,950	7.7
	전략목표 III	118,228	106,939	11,289	1.0
	전략목표 IV	1,135,210	996,851	138,359	10.1
	전략목표 V	579,357	616,234	△36,877	5.1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소 계 ( B )	8,193,893	9,842,981	△1,649,088	73.4
	인력운영비	7,095,608	6,929,454	166,153	63.5
	기본운영경비	1,078,232	1,090,226	△11,994	9.6
	지방채상환	52	52	0	0
	BTL사업비	0	0	0	0
	예비비 등	20,000	1,823,248	△1,803,248	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4년도 성과지표는 총 86개로,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85개는 정량지표, 1개는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내용에 따라 투입·과정지표는 7개(8.1%), 산출·결과지표는 79개(91.9%)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41〉 2024년도 성과지표 설정 및 분류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A)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5	86	85	1	2	5	36	43
	(100.0)	(98.8)	(1.2)	(2.3)	(5.8)	(41.9)	(50.0)

※ ( )은 성과지표수(A)에 대한 구성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다만, 정성지표로 분류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의 교사·학생 학습도움 인식도”는 디벗 활용 학습효과에 대한 학생 및 교사 인식도(만족도)를 문항지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지표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목표치를 3.5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이는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결과를 측정산식에 따라 구체화된 수치로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정량지표”로 수정되어야 하며, '23년도 목표달성 실적(3점)을 '24년도부터 3년간의 목표치(3점)로 설정한 것은 추진과정상의 미흡함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성과지표중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률”은 “더 맛있고, 더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이라는 성과목표 달성하기 위한 투입지표로 사료되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 성과지표는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와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부적정한 사례로 제시 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검토하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 치 이하로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

■ 특히, “자유학기(년)제 연수 실적”과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수 달성률”의 경우, '23년부터 '26년도까지 4개년도 성과지표 목표치가 100%로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반영률 만족도”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실적치(70%)가 향후 3년간의 목표치(70%)로 설정되어 부적정한 목표치 설정 사례로 사료되는 바,

-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성과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2〉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성 과 지 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2	'23	'24	'25	'26	
학급당 적정 학생수	목표	23.0명	22.1명	22.3명	22.1명	22.0명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22.4명	22.3명	-	-	-	
자유학기(년)제 연 수 실 적	목표	100%	100%	100%	100%	100%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100%	100%	-	-	-	
학 습 연 구 년 운 영 만 족 도	목표	90%	96.3%	96.3%	96.3%	96.3%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96.29%	96.3%	-	-	-	
교육감공약사업 이 행 추 진 율	목표	95%	80%	96%	97%	97%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7%	85%	-	-	-	
서울형혁신학교 성 장 지 원	목표	신규	80%	83%	85%	87%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	89%	-	-	-	
학 부 모 사 업 참 여 자 증 가 비 율	목표	105%	110%	105%	105%	105%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13%	105%	-	-	-	
예산안에 대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목표	82.5%	86.6%	79.8%	84.6%	84.1%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86.3%	87.8%	-	-	-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 교 수 달 성 률	목표	신규	100%	100%	100%	1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및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	120%	-	-	-	
학 생 교 육 원 시 설 이 용 률	목표	89.5%	90%	90%	90%	90%	4개연도 이상목표 치 동일 및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102.6%	110.9%	-	-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반영률만족도	목표	70%	70%	70%	70%	70%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70%	70%	-	-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 령 도 평 가	목표	신규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	3등급	-	-	-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 용 률 제 고	목표	신규	110%	110%	110%	110%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	110%	-	-	-	
민 방 위 대 피 훈 련 참 여 실 적	목표	96%	96%	96%	96%	96%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미실시	96.2%	-	-	-	

### 3)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4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
  - '23년도 세출예산중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458건, 2,402억 6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명시이월액 규모는 전년도(3,259억 600만원) 대비 △26.3%, △857억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2-43〉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비 율	증 감	증 감 률
2 0 2 3	13,553,736	458	240,206	1.8	△85,700	△26.3
2 0 2 2	14,633,332	677	325,906	2.2	253,457	353.7
2 0 2 1	11,815,292	137	72,448	0.6	8,225	1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는 ①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2,402억 600만원)의 18.4%, 441억 8,700만원, ②사업추진중 장애발생 61.0%, 1,466억 3,000만원, ③사업비 부족 2.7%, 63억 7,800만원, ④기타 17.9%, 430억 900만원으로 확인됨

〈표 2-44〉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① 사업추진기간부족	② 사업추진시 장애발생	③ 사업비부족	④ 기 타
건 수	458	42	273	29	114
이 월 액	240,206	44,187	146,630	6,378	43,009
구 성 비	100.0	18.4	61.0	2.7	17.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보광초 외 10교)** 74억 7,000만원은 지난 7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이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바, 설계 공모,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 심의 등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제출하였음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ICT활용교육지원은 **스마트기기보급(디벗)** 사업으로, 지난 7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한 274억 3,400만원 중 264억 7,100만원에 대해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에는 ‘디벗기기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및 계약 추진’ 기간을 ‘2023년 5월~12월’로 기재하였으나, 예산안의결 후 사업설명서를 수정하여 ‘2023년 7월~2024년 2월’로 추진 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의결 직후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회계연도 내에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명시하고, 예산확정 후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설명서를 수정하면서 예산의 이월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되어 소관부서(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의회의 예산심사를 형식화시키는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스마트기기보급(디벗) 사업의 경우, 직전연도인 '22년도에도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을 사유로 353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한 후 다음연도에 집행한 사례가 있고,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계속되고 있는 바, 명시이월 요청된 예산액과 연동하여 '24년도 편성요청액(3,194억 8,100만원)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5〉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64,686	44,187	
1	스마트기기보급 (디지털선도학교)	23,792	23,792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각종 행정절차(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물품용역선정위원회, 원가조사, 일상감사, 과업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1차 추경 반영 중학교 집행잔액 일부 포함)
2	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 (디지털선도학교)	1,579	1,579	
3	스마트기기보급 (중학교)	19,728	975	
4	진선여중 체육관 전면보수	1,592	1,592	○ 학기중 체육 수업 활동을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예정
5	명지고 소강당 전면보수	1,450	1,450	○ 다목적관 소강당 공사 계획 협의 중
6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보광초)	1,000	1,000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7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창동초)	1,000	1,000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8	개포도서관건립	1,958	958	○ 설계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9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신창초)	900	900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10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당곡초)	900	900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11	서일문화예술고 체육관 전면보수	881	881	○ 내진보강과 외벽공사 동시진행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12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화계초)	850	850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13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삼선중)	800	800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14	진선여고 본관 화장실개선	800	800	○ 학기중 공사 진행시 화장실 사용불가로 인한 수업지장으로 겨울방학중 공사 예정
15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전농중)	630	629	○ 2차 추경 반영(7월) 예산으로 사전 절차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 5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사업은 273건, 1,466억 3,000만원으로 해당 사업중 107건, 480억 9,600만원은 '**내진보강 간섭사업으로 다음연도 내진보강사업과 병행추진**'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은 주로 '외벽개선, 외부창호개선, 드라이비트해소, 도장공사 등' 내진보강공사 시 간섭되는 공종인 바,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유와 같이 내진보강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소관 부서(교육시설안전과)에서 이미 지난 '18년도와 '21년도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계획도 매년 공개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 시 상호 간섭사업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시점에 미리 내진보강대상 및 간섭공종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①은평고 체육관 증축은 '23년도 본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한 사업이나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을 사유로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바,

- 동 사업은 지난 '22년 7월, 서울시전입금(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44억 9,900만원)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서울시사업비 지원이 미확정되어 자체재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확인됨



〈표 2-46〉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156,703	146,630	
1	(가칭) 동진학교 토지보상비	27,690	27,690	○ 토지소유주와 사업 협의 지연 및 손실 보상 절차 장기 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2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위례초)	15,003	7,900	○ 장기계속공사 조달청 계약지연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능
3	노후교사개축 시설비(상도유)	5,000	5,000	○ 인근 재개발사업 지연(도로 공사, 2024년 2월 완료)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능
4	(가칭)대방유 신설	2,269	2,266	○ 설계기간 장기 소요, 대방초 별관 증개축 공사와의 연계 검토로 인해 연도내 집행 불가능
5	서연중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2,000	1,942	○ 각종 인증 및 구청 협약 지연 등으로 인해 연도내 집행 불가능
6	가락중 본관 화장실 개선	1,761	1,761	○ 2023년 교내 다수의 공사 진행으로 추진이 힘들다는 학교 의견 고려하여 공사시기 연기
7	선유초 교사동드라이비트해소	1,764	1,750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8	영림초 교사동외벽개선	1,683	1,634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9	한천중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611	1,577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10	대경생활과학고 본관외벽개선	1,526	1,526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11	묘곡초 교사동외벽개선	1,460	1,460	○ 학교의 내진공사시기 변경 요청으로 2024년 하반기 공사 추진 예정
12	청운중 본관동 드라이비트해소	1,481	1,451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13	세화여중 교사동외부창호교체	1,404	1,404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14	두산초 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	1,020	1,020	○ 내진보강 간접공종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
15	① 은평고 체육관 증축	1,000	1,000	○ 서울시전입금 확보 문제로 인한 재정투자심사 재심사 필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

※ 10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29건, 63억 7,800만원은 전액 시설사업비(학교시설환경개선)로 확인되는 바,
  - ①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단가 차이,
  - ②현장사정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물량누락, 교부기준 상이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예산 편성시 소요액을 정밀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7〉 사업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합계		8,025	6,378	
1	서라벌고 체육관 전면 보수	1,327	1,327	○ 지하체육관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선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 확보 후 추진 필요
2	배화여고 강당동 석면해체 제거작업	326	326	○ 설계상 석면 공사비 부족분 추가 확보하여 2024년에 집행 예정
3	한국삼육고 생활관 스프링클러 설치	473	473	○ 건축사 설계 후 공사내역금액이 예산액보다 1억원 초과하여 연도내 집행불가능
4	등촌중 급식실 이전에 따른 문화예술 소극장 조성	326	326	○ 문화예술소극장 설치시 누락된 샌드위치판넬 해소비 지원 필요
5	송문고 본관동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315	315	○ 설계검토 진행중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어 예산 확보 후 추진
6	전곡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322	312	○ 드라이비트 면적 추가 발견되어 2024년 예산 추가배정 후 2024년 공사 예정
7	서울삼성학교 본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297	297	○ 해당 학교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 교부된 예산(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만으로는 사업비 부족
8	은평메디텍고 실습관 드라이비트 해소	181	181	○ 드라이비트 면적 추가 발견되어 2024년 예산 추가배정 후 2024년 공사 예정
9	강동고 본관동 및 별관동 외벽 방수공사	156	156	○ 발수코팅 단가로 본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발수코팅으로는 방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탄성도막코팅으로 진행 필요
10	한남초 동관 드라이비트 해소	140	135	○ 실면적 증가, 외부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추가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11	미아초 교사동 내부도장	115	111	○ '23년 7월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 1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기타 사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사업중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의 경우, '재정투자심사 지연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능'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나, '23년도에 예산 심사시에는 동 사업에 대해 '재정투자심사 해당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명시이월을 요청한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의 경우, '23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만을 계획하여 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3년 5월,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으로 확정되어 '24년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과 강당 겸체육관 증축을 병행추진(총사업비 71억 9,600만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23년 9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여 28억 3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고자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제도시행의 취지가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재원의 한정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는 명시이월 보다는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 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2024~2028)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은 유·초·중등교육의 지출계획 및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중기교육재정계획은 ①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초·중등교육의 투자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전략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기여하며, ③국가의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로서
  -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은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을 포함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73조 1,112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전망한 바,
  -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총재정규모를 66조 444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전망하며, 기금의 경우에는 총재정규모를 7조 668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6.9%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48〉 재정규모(총계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재정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증감율
계	73,111,280	14,340,907	14,460,171	14,408,036	14,887,614	15,014,552	1.2
교특 회계	66,044,404	12,269,413	12,769,606	13,282,513	13,697,483	14,025,389	3.4
기금 주1)	7,066,876	2,071,494	1,690,565	1,125,523	1,190,131	989,163	△16.9

※ 주1) 기금수입 = 당해연도 기금전입금 + 전년도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23.11), p.23

○ **세입전망**의 경우, 총 규모 73조 1,112억원, 연평균 규모 14조 6,222억원으로 연평균 1.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이전수입**의 경우, 총 규모 63조 1,452억원, 연평균 규모 12조 6,290억원으로 기타이전수입을 제외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자체수입**의 경우, 총 규모 6,640억원, 연평균 규모 1,328억원으로 연평균 0.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차입**의 경우, 해당기간중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전망액이 없으며 **기타**의 경우, 총 규모는 1조 6,850억원, 연평균 규모는 3,37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 회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4.1%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내부거래**의 경우, 총 규모 5,500억원, 2024년도 3,300억원, 2025년도 2,200억원의 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임
- **기금수입**의 경우, 총 규모 7조 668억원, 연평균 규모 1조 4,133억원으로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2023~2024년 재정규모가 감소되면서 기금수입도 2028년까지 연평균 △16.9%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49〉 총괄 세입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규모	비중	증감율
계	731,112	143,409	144,601	144,080	148,876	150,145	146,222	100.0	1.2
교 특 회 계	660,444	122,694	127,696	132,825	136,974	140,253	132,088	90.3	3.4
이전수입	631,452	114,204	120,956	128,251	132,392	135,648	126,290	86.4	4.4
자체수입	6,640	1,345	1,291	1,312	1,334	1,356	1,328	0.9	0.2
차 입	0	0	0	0	0	0	0	0.0	0.0
기 타	16,850	3,844	3,248	3,261	3,248	3,248	3,370	2.3	△4.1
내부거래	5,500	3,300	2,200	0	0	0	1,100	0.8	△100.0
기 금 수 입	70,668	20,714	16,905	11,255	11,901	9,891	14,133	9.7	△16.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23.11), p.24 재구성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73조 1,112억원, 연평균 규모 14조 6,222억원으로 전망한 바,

- **유아 및 초·중등교육**(전체의 45.9%)의 경우, 33조 5,378억원 규모로 연평균 3.2%, **인건비**(전체의 41.8%)는 30조 5,750억원 규모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교육일반**(전체의 11.7%)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및 예치금 감소 등으로 연평균 △10.0% 감소 하고, **평생교육**(0.2%)은 1,629억원 규모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이며, **예비비**(0.4%)는 3,084억원 규모로 매년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표 2-50〉 부문별 세출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규모	비중	증감율
계	731,112	143,409	144,601	144,080	148,876	150,145	146,222	100.0	1.2
유아 및 초·중등교육	335,378	60,805	66,754	68,223	70,583	69,011	67,075	45.9	3.2
평생교육	1,629	313	331	324	330	328	325	0.2	1.2
교육일반	85,269	23,294	17,532	14,767	14,361	15,314	17,053	11.7	△10.0
예 비 비	3,084	616	616	616	616	616	616	0.4	0.0
인 건 비	305,750	58,379	59,365	60,147	62,983	64,874	61,150	41.8	2.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23.11), p.33 재구성

-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총224개 사업, 6조 734억 원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1〉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수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향후
계	224	60,734	13,589	47,145	9,824	8,610	10,998	9,672	4,879	3,159
학교급식 환경개선	23	721	29	692	93	312	205	43	27	12
학교신증설	34	23,098	10,839	12,259	6,408	2,115	2,119	1,363	159	95
학교시설개선	157	33,737	2,360	31,377	3,102	5,694	7,826	7,782	4,343	2,629
기관시설 유지관리	10	3,178	361	2,817	220	490	848	484	350	42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23.11), p.48 재구성

- 다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법인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기금에 해당되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경우,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운용계획이 삭제되고, 관련 조례도 폐지 예정에 있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도 '폐지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5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중 생태전환교육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포함시켜 수정 제출한 바, 예산안이 제출된 현시점에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된 이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사후적으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 등이 협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4~2028)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1년 4월 개정된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4년도부터 '28년도 까지 5년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취득규모**는 116건, 3조 3,001억 3,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총 처분규모**는 60건, 728억 8,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2〉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연평균 증감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취득	13	204,470	69	1,931,312	14	299,405	9	146,140	11	718,810	116	3,300,137	275.18
처분	7	7,407	33	41,266	9	10,778	9	11,319	2	2,115	60	72,885	76.74
사용 허가	114	563	144	582	144	599	144	617	144	636	690	2,997	3.10
대부	239	494	239	509	239	523	239	538	239	554	1,195	2,618	2.9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10), p.3 재구성

- 「공유재산법」 제10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바,
  -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음
  
-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예산서 첨부서류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명확히 하였으나,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여전히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어,
  -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22년 4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 서울시교육청은 '23년 12월,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바, 동 시행령 부칙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 없이 종전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한 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년 4월) 규정을 반영하여 소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과조치에 근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보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이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으나, 이미 조례를 개정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종전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공시지가 차이, 대도시 교육행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취지에 적합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3A〉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관련 조례 현황

연 번	시·도교육청	관 련 조 례 ( 조 문 )
1	서울특별시교육청	<p>「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없음</p>
2	경기도교육청	<p>「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3. 2.27 개정) 제14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23.2.27.&gt;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lt;신설 2023.2.27.&gt;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lt;신설 2023.2.27.&gt;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3	강원도교육청	<p>「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11. 4 개정)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22.11.4.&gt;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p>
4	경상남도교육청	<p>「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3. 8. 3 개정)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조5425, 2023.8.3.&gt;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p>

〈표 2-53B〉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관련 조례 현황

연 번	시·도교육청	관 련 조 례 ( 조 문 )
5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2.11. 3 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6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3. 5.30 개정)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7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2.12.30 개정)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8	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2.12.30 개정)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표 2-53C〉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관련 조례 현황

연 번	시·도교육청	관 련 조 례 ( 조 문 )
9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p>「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2.12.30 개정)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략)</p> <p>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23. 10. 11.&gt;</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p> <p>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5천제곱미터</p>
10	세 종 특 별 시 교 육 청	<p>「세종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2.12.20 개정)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④ (생략)</p> <p>⑤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lt;신설 2022.12.20.&gt;</p> <p>1. 취득의 경우: 2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p> <p>⑥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lt;신설 2022.12.20.&gt;</p> <p>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 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 제곱미터</p>
11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p>「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3. 8.20 개정)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략)</p> <p>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lt;신설 2023.8.10 조2779&gt;</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p> <p>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12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p>「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3. 6.5 개정)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② (생략)</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23.6.5 조7031&gt;</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표 2-53D〉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관련 조례 현황

연 번	시·도교육청	관 련 조 례 ( 조 문 )
13	전 라 남 도 교 육 청	<p>「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3. 9.21 개정)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 ③ (생략)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lt;신설 2023.9.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2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10억원</li> </ol> </li> <li>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li> </ol> </li> </ol>
14	전 라 북 도 교 육 청	<p>「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3.11.10 개정)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23.11.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2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10억원</li> </ol> </li> <li>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li> </ol> </li> </ol>
15	제 주 특 별 자 치 교 육 청	<p>「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3. 1. 3 개정)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한다. &lt;신설 2023. 1.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2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10억원</li> </ol> </li> <li>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li> </ol> </li> </ol>
16	충 청 남 도 교 육 청	<p>「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2. 8.10 개정)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② (생략)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없음</p>
17	충 청 북 도 교 육 청	<p>「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23. 2. 3 개정)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lt;신설 2023. 2.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2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10억원</li> </ol> </li> <li>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li> </ol> </li> </ol>

(2) 실·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안전총괄담당관

□ 안전인프라 구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38)

○ 안전인프라 구축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확립, 신속한 대응 및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33억 5,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4〉 안전인프라 구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률
계	3,357	1,681	1,675	99.7
교육안전위원회운영	6	8	△2	△29.8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 운영	1	3	△1	△50.0
① 안전체험관건립 및 운영 지원	1,536	24	1,512	6,302.1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10	19	△9	△46.7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지원	30	100	△70	△70.0
② 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	179	-	179	순증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훈련	53	63	△9	△15.0
초등학교 교통 안전 지도 활성화	137	212	△74	△35.1
초등학생 등하교안심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	3	△3	순감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22	22	-	0.0
③ 학교 CCTV 설치 지원	1,230	1,200	30	2.5
학교 안전평가단 운영	9	10	△0.7	△7.1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강화	4	15	△10	△68.0
④ 학교 출입 관리 강화	134	-	134	순증



- 소관부서인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난 '23년 7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부서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입,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 학생안전관리** 사업 관련 소관 부서임
- 세부사업인 **학생안전관리**의 세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안전인프라 구축**은 금년도(16억 8,100만원) 보다 99.7%, 1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 ①**안전체험관건립 및 운영지원**은 강서(서남권) 안전교육센터(가칭)의 건립·운영을 위해 15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각종 재난과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학생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17년도에 교육부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24년 3월 개관 예정인 바, 설계 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11억원)와 개관후 운영비(3억 9,800만원)를 교육청·서울시·강서구가 1:1:1로 분담하고, 시도교육청분담금(3,800만원)으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②**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는 '24년도부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대비하기 위한 '24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③**학교CCTV설치지원**은 모든 학교의 CCTV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 설치비를 지원하여 저화소 여부 및 학교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립 246교에 각 500만원씩, 총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12억원) 보다 3,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④**학교출입관리강화**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 강화를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2) 기획조정실

### □ 예비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27)

-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예산과목이며 세부사업임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11조 1,605억 3,600만원)의 0.09%, 10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한 100억원을 계상하여 '23년도 예비비 편성 규모와 동일한 2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
  - '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예비비는 ①일반예비비 편성규모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로서 ②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고된 '23년도 1~3분까지의 예비비 지출액(21건, 146억 6,700만원)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특정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별도의 세세부사업 「소송관리」 항목에서 소송비용 등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비비 추진현황에서 소송관련 비용지원으로 6건, 102억 800만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비비(200억원)의 51%(일반예비비 100억원 총액보다 초과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예비비 사업항목에서 바람직한 지출결정이었는지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결산 심사시 검토될 사안이라 할지라도 '24년도 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교육청이 부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 지출을 통한 소송비용 지출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5〉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 도		증 감 ( A - B )	증 감 륜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20,000	20,000	20,000	-	-
	일 반 예 비 비	10,000	10,000	10,000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10,000	10,000	-	-

○ 아울러 지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예비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예비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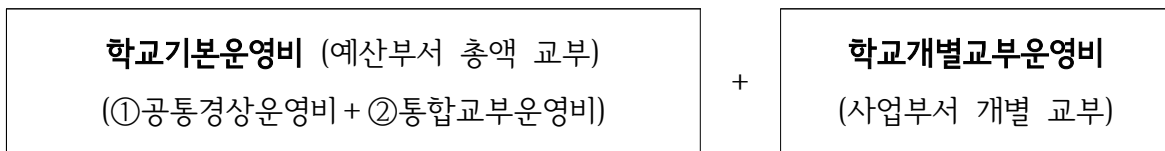
-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편성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비비 확보수준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예비비중 불용액 발생 규모가 큰 것은 결국 교육청이 여유자금을 예비비에 비축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기준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립학교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64)
- **학교개별교부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3)

○ 예산담당관 소관 **공립학교운영비**는 서울시 관내 1,271개교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와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교부하는 **학교개별교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표 2-56〉 '24년도 학교운영비 편성구조



○ **공립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최종예산(7,967억 7,000만원)보다 △6.4%, △511억 2,100만원 감액한 7,45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57〉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 도		증 감 (A - B)	증 감 륜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745,649	706,035	796,770	△51,121	△6.4
학 교 기 본 운 영 비	670,959	610,636	701,371	△30,411	△4.3
개 별 교 부 운 영 비	74,689	95,399	95,399	△20,710	△21.7

○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가 기본적 교육활동, 공공요금, 시설관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필수경비로, ①공통경상운영비와 ②통합교부운영비를 합하여 총 6,709억 5,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금년도 최종예산(7,013억 7,100만원) 보다 △304억 1,100만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58〉 학교기본운영비(공립) 편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4 년 도 예 산 안	2 0 2 3 년 도 최 종 예 산	증 감
(①+②) 학 교 기 본 운 영 비	670,959	701,371	△30,411
①공통경상운영비	534,850	540,633	△5,782
②통합교부운영비	136,109	160,738	△24,6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본예산(6,106억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603억 2,3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①공통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물가인상·중대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76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②통합교부운영비는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중 학교 운영비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편입 및 유사사업 통합 정비로 △163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됨
- '23년도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인상 등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의 추가 지원이 회계연도중 발생하였고, 추경을 통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바 있어, 소요예산의 증감사유 또한 중요한 설명자료로 사료되나, 학교기본운영비를 최종예산과 비교분석한 설명자료는 일체 없고 단순 '수치표기'로 작성하고 있어 향후 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가 '기본적 교육활동과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필수경비'로서 금년도 최종예산(7,013억 7,100만원) 보다 △304억 1,1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공립 1교당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는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4.0%, △2,300만원 감소된 평균 5억 2,700만원이 학교 기본운영비로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표 2-59〉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670,959	701,371	658,757
지	원 학 교 수	1,271	1,275	1,278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527	550	515
	증 감 륜	△4.0	6.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특정수요가 있는 학교에만 편성되는 통합교부운영비를 제외한 단위학교별 **공통경상운영비**만을 비교하면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공립 1교당 평균 4억 2,000만원의 공통경상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요금 인상 등 학교운영비 지출환경이 적절히 반영된 편성사례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60〉 '23년~'24년 공통경상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 A - B )
공통경상운영비	총액	534,850	540,633	△5,782
지	원 학 교 수	1,271	1,275	△4
평균	공통경상운영비	420	424	△4

- **개별교부운영비**는 해당 학교별 특정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산정한 후 학교 실정에 맞게 개별지원하며 집행잔액을 정산하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개교 및 개축학교경비, 학교평등예산 등 21개 사업에 746억 8,900 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1〉 개별교부운영비 편성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 업 항 목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증감(A-B)	증 감 륜
계		74,689	95,399	△20,710	△21.7
1	개교경비및개축학교이전경비지원	3,495	2,341	1,154	49.3
2	과 학 고 및 영 재 학 교 운 영	1,502	1,542	△40	△2.6
3	교 과 교 실 제 운 영 비 지 원	850	850	-	0.0
4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6,479	10,007	△3,528	△35.3
5	마 이 스 터 고 운 영 비	1,400	2,000	△600	△30.0
6	미래기술교육센터활성화	70	100	△30	△30.0
7	미 화 원 인 건 비 지 원	7,522	10,676	△3,153	△29.5
8	방 송 통 신 중 고 운 영	1,407	1,568	△16	△10.3
9	서 울 형 작 은 학 교	200	200	-	0.0
10	실험실습재료비지원확대	1,555	1,555	-	0.0
11	일 반 고 교 육 역 량 강 화	9,175	9,490	△314	△3.3
12	중 등 스포츠강사지원	7,140	7,140	-	0.0
13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70	170	-	0.0
14	특 수 돌 봄 교 실 지 원	412	513	△101	△19.7
15	특수학교통학버스운영비지원	2,647	3,490	△842	△24.2
16	특수학급운영비및유아교육비	7,588	8,015	△427	△5.3
17	학 교 정 보 화 기 기 보 급	9,166	15,337	△6,171	△40.2
18	학 교 평 등 예 산 제	2,400	4,800	△2,400	△50.0
19	학교행정효율화시범학교운영	50	550	△500	△90.9
20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	176	240	△64	△26.7
21	혁 신 학 교 운 영 비	11,280	14,810	△3,530	△2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79)

- 예산담당관 소관 **공무원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한 것으로 '24년도 소요액 4조 6,090억 4,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2〉 공무원(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 감 륜
계		4,609,044	4,469,070	139,974	3.1
	보 수	3,435,919	3,414,406	21,512	0.6
	법 정 부 담 금	989,052	868,427	120,625	13.9
	명 예 퇴 직 수 당	112,190	112,400	△210	△0.2
	맞 춤 형 복 지 비	71,882	73,836	△1,953	△2.6

- 보수의 경우, ①'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5%) 적용에 따른 증가분과 ②'24년도 정원 증감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15억 1,200만원 증액된 3조 4,359억 1,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법정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에 비례하는 부담금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24년도 법정부담금 효율인상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206억 2,500만원이 증액된 9,890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공립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1,121억 9,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①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1,076명분, 1,076억원, ②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7명분, 39억 9,000만원, ③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 4명분, 6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2억 1,000만원 감액된 1,121억 9,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①기본점수(90만원), ②근속점수 부여, ③출산축하점수, ④가족점수, 근속점수 상한액, 출산축하점수 등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나 직종별 정원 감소(△895명)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738억 3,600만원)보다 △19억 5,300만원 감액된 718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63〉 '23~'24년도 맞춤형복지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본복지	변 동 복 지	동										복			지		
			가 근속 <sup>주1)</sup>	족					출산축하					건 강 검 진	난 지 임 원	태 산 검 침	아 모 진	
				배우자	작계 존속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격년제	해당자					
													1회					자녀당 1회
'23년	900	최대 350	200	100	100	200	300	1,000	3,000	5,000	200	500	100					
'24년	900	최대 350	200	100	100	200	300	1,000	3,000	5,000	200	500	100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81

※ 주1) '24년도 근속점수 부여방식(10년차까지 100점, 11년차부터 10점씩 누적)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8)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391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표 2-6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 감 률
계		39,147	32,332	6,815	21.1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14,560	15,173	△612	△4.0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운영		24,586	17,159	7,427	43.3

-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1일 이상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을 시간당 단가로 책정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를 지원하는 것으로, '24년도 생활임금은 금년도 대비 110원 인상되었으나 편성인원이 금년도보다 △20명 감소되어 △6억 1,200만원 감액한 145억 6,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요청된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은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매월 145만원)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소요액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71억 5,900만원) 보다 43.3%, 74억 2,700만원 증액된 245억 8,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법정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지난 '16년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

년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나 시행일로부터 3년간(’21년부터 ’23년도 납부분까지)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받아 납부하였음

- 그러나 ’24년도 납부분(’23년도 부과분)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하여 감면 없이 고용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장애인고용부담금(근로자·공무원)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최종예산(43억 9,100만원) 보다 156.8%, 68억 8,400만원 증액된 112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표 2-65〉 ’23년~’2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내 용	2024년 예산안	2023년 최종예산	증 감 액 ( 증 감 륜 )
계	11,275	4,391	6,884 (156.8)
장애인고용부담금 (근로자)	○ 144,840천원 1,207,000원×6개월×20명	○ 413,640천원 1,149,000원×12개월×30명	△268 (△65.0)
장애인고용부담금 (공무원)	○ 11,130,954천원 1,279,420원×12개월×725명	○ 3,977,520천원 1,217,940원×12개월/2×725명 △1,320,519,000원×1식	7,153 (179.8)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11
-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6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90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금년도 최종예산(39억 7,700만원) 보다 179.8%, 71억 5,300만원 증액된 111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3년도 예산안 심사시 장애인공무원의 고용률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결국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소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만 성실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장애인공무원의 선발을 장려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66〉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 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24,586,794	
장애인근로자인건비 ( 행정 기관 )	957,000	○ 인건비 1,450,000원×12개월×55명
장애인고용부담금 ( 근로 자 )	144,840	○ 운영비 1,207,000원×6개월×20명
장애인고용부담금 ( 공 무 원 )	11,130,954	○ 운영비 1,279,420원×12개월×725명
장애인근로자인건비 ( 공 립 학 교 )	12,354,000	○ 학교회계전출금 1,450,000원×12개월×710명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90

□ **교육급여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25)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17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67〉 교육급여지원 편성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 감 륜
계		31,705	30,869	836	2.7
기타급여	인원수	40,322	42,780		
	예산액	24,095	23,263	832	3.6
입학금및 수업료	인원수	1,103	1,159		
	예산액	7,610	7,606	4	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기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무상교육 비대상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경비로 ①'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분 및 ②결정통지용 우편요금(5,8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308억 6,900만원) 보다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 대상자수가 1,159명에서 1,103명으로 감소(△56명)하였으나 지원단가 인상으로 금년도 최종예산(76억 600만원) 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자녀로서 무상교육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전 6억 8,100만원이 '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된 것임

○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의2조에 따라 소요 재원을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 국가·서울시·자치구는 각각 60:28:12를 분담하나, 교육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교육청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0% 부담하는 바,
- '24년도 편성액(316억 4,600만원)중 교육청 부담분은 54억 1,700만원이며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비율(60:28:12)에 따라 262억 2,800만원 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68〉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현황

(단위 : %, 백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분담기관 (분담률)	분담액	분담기관 (분담률)	분담액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5,417	국가(60)	14,422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국가(60)	1,314	서울시(28)	6,730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서울시(28)	613	자치구(12)	2,884
		자치구(12)	262		
합계			7,609	합계	24,03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707('23.11. 1)

□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49)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료후 '23년도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으로 금년도(147억 1,600만원) 보다 △43억 6,700만원 감액된 103억 4,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은 서울시가 부담주체에서 제외되고, 교육청(지원청)과 자치구의 협력체제로 지역사회연계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5개 자치구와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표 2-69〉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 감 륜
계	10,349	14,716	△4,367	△29.7
① 교육후견인제 운영	406	406	-	0.0
사회협력지원	6	9	△3	△34.7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단체등협의체운영	16	41	△24	△59.1
② 자치구특화 프로그램 운영	3,362	3,217	145	4.5
③ 지역사회연계 미래교육과정운영	5,336	10,499	△5,162	△49.2
④ 청소년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운영	1,220	542	678	125.1

○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은 ①교육후견인제운영, ②자치구특화프로그램운영, ③지역사회연계 미래교육과정운영, ④청소년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운영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②자치구특화프로그램운영, ③지역사회연계 미래교육과정운영의 경우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이 25개 자치구와 학교별로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바,

- ②자치구특화프로그램운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치구당 1억원 내외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④청소년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운영은 4개교(오류중, 방학중, 양서중, 이수중)에서 운영되며 지역 청소년의 방과후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 및 돌봄과 쉼 공간으로 금년도 2개교에서 4개교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입학준비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67, p.471)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입학준비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로 금년도 최종예산(565억 1,100만원)보다 △34억 6,400만원 감액된 530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24년도 편성액(530억 4,700만원)중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라 교육청 254억 3,300만원, 서울시 159억 1,400만원, 자치구 117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70〉 입학준비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계		53,047	56,511	△3,464	△6.1
	입 학 준 비 금	37,133	39,558	△2,424	△6.1
	입 학 준 비 금 (서울시 전입금)	15,914	16,953	△1,039	△6.1

○ 동 사업은 지난 '21년도부터 중·고교 신입생 대상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22년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2년 6월, 입학지원금 사용범위를 기존 의류 및 도서에서 입학에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한 바 있음

- '24년도의 경우, 서울시가 편성한 교육경비보조사업중 입학준비금 159억 1,4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71〉 2024년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 감 (B-A)	추진목표
계		29,079	15,914	△13,165	
일 반 교 육 경 비		3,036	-	△3,036	
	①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	△600	
	②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	△660	
	③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	△1,000	
	④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776	-	△776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7,268	15,914	△1,354	195,000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7,000	-	△7,000	
특별교육경비		1,775	-	△1,77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사업설명서(평생교육국)」, p.322

- 그러나 부모소득과 상관없는 일괄 지원 교육감의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교부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뉴스기사가 입학준비금 지원시기마다 등장하고 있어, 동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납세자인 시민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15)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원인건비**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임금,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7,172억 4,200만원) 보다 0.7%, 46억 7,500만원 증액한 7,219억 1,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2〉 교육공무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A-B)	증 감 륜 (C/B)
계		721,918	717,242	4,675	0.7
교육공무원 통합인건비		707,365	702,919 <sup>주1)</sup>	4,445	0.6
맞춤형복지비		14,552	14,322	230	1.6

- ※ 주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p.1434)을 참고하여 편성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통합인건비’의 ‘23년도 최종예산 7,029억 1,900만원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인건비 이관금액이 합산된 금액임.
  - 실제 3개 직종 이관 전후의 증감액 파악을 위해서는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p.489)를 참고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통합인건비’는 금년도(5,083억 4,200만원) 보다 39.2%, 1,990억 2,200만원 증액된 7,073억 6,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공무원 통합인건비**는 행정기관 및 공립 1,274교, 29개 직종 15,994명, 6,495억 7,300만원과 사립 298교, 8개 직종 1,318명, 577억 9,100만원으로 교육공무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통합편성한 것으로,

- 교육공무직노조와 일반직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사업비와 구분 편성’과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는 교육청이 직접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21년도부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구조를 직종(사업)별에서 인건비(기본급·수당)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24년도에는 금년도까지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여 온 공립학교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에 신규 편성된 바,
  -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중 공립학교 조리종사원(조리사,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4,838명분, 1,907억 9,700만원이 통합편성한 것으로,
  - '22년도까지 조리종사원 직종에 대한 무상급식 재원 분담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되어 있어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23년도부터 공립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통합편성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검토됨

〈표 2-73〉 '24년도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편성 추가 직종 현황

'23년도 목적사업비 교부 직고용 직종	
○ 조 리 사	(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
○ 조 리 실 무 사	(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
○ 시 설 관 리 원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

- 아울러 '24년도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의 경우, '2022년 단체(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현재 '2023년 집단임금교섭'이 진행중에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요예산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3) 교육정책국

#### □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활성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72)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소관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활성화**는 디지털 기반 교과서와 원격교육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분담금으로 전액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도(57억 7,100만원) 보다  $\Delta 70.6\%$ ,  $\Delta 40$ 억 7,200만원 감액한 16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2-74〉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활성화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 (A-B)	증감률
계	1,698	5,771	$\Delta 4,072$	$\Delta 70.6$
①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1,210	4,173	$\Delta 2,962$	$\Delta 71.0$
②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특별교부금)	-	504	$\Delta 504$	순감
③ 원격교육기반구축	488	460	27	6.1
④ 원격교육기반구축 (특별교부금)	-	633	$\Delta 633$	순감

- ①**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는 기존 초 5~6학년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지원을 위해 12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②**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특별교부금)**을 편성하였으나, '24년도 본예산안에는 동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시 지연으로 '24년도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지는 못한 것이나, 지난 9월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위탁운영이 진행중에 있어 '24년도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특별교부금 12억 3,600만원이 편성될 것으로 확인됨
- ③원격교육기반구축과 ④원격교육기반구축(특별교부금)은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와 쌍방향 온라인 교원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샘터'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을 위해 ③원격교육기반구축 4억 8,800만원을 전액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편성하고, ④원격교육기반구축(특별교부금)은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내시 지연으로 대응편성되어야 할 국비(특별교부금)가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특별교부금(4억 400만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

□ **원격교육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81)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소관 **원격교육지원**은 '25년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에 맞춰 1인 1스마트기기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디벗 스마트기기 구입'과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혼합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디지털환경조성** 3,736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75〉 원격교육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 0 2 4 년 도 예 산 안 ( A )	2 0 2 3 년 도 최 종 예 산 ( B )	증 감 ( A - B )	증 감 륜
디 지 털 환 경 조 성	373,631	96,815	276,816	285.9

- 디지털환경조성은 ①교원·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디벗」 구입, ②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③스마트기기 양품화비, ④전자칠판 설치비, ⑤디지털튜터 용역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최종예산(968억 1,500만원) 보다 2,768억 1,600만원 증액한 3,736억 3,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①교원·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디벗」 구입과 ②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은 '24학년도 중1, 고1, 고등학교 교원과 '25학년도 고1, 초3·4, 초 교원에게 혼합수업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194억 8,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③스마트기기 양품화는 '22학년도에 도입된 스마트기기 74,701대를 양품화하여 '25학년도 중1 학생에게 재배부하기 위해 112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④전자칠판 설치는 국·공·사립의 중3, 고1, 특수학급의 4,622학급에 전자칠판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전출금 및 학교회계전출금으로 415억 9,8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⑤디지털튜터 용역 운영은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는 고등학교 322교를 대상으로 '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초기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디지털튜터를 지원하기 위해 13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디벗 스마트기기는 '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923억 8,900만원, 전자칠판은 1,590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여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51억 2,0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316억 9,4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표 2-76〉 2023년도 디벗 스마트기기, 전자철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디벗 스마트기기 <sup>주1)</sup> (보급대상)	전자철판 <sup>주2)</sup>	계
계	56,405	40,410	96,815
본예산	-	-	-
1회추경	28,970 (중1학생 부족분)	36,150	65,120
2회추경	27,434 (초중고디지털선도학교)	4,260	31,694

- ※ 주1) '23년도 (세세부)원격교육지원 중 '디지털환경조성'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구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예산으로 한정함  
 - 스마트기기 구입, 충전함보급, 디지털튜터용역운영, 스마트기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등  
 주2) '23년도 (세세부)물품관리 중 '전자철판설치' 사업 예산으로 한정함

- 그러나 '23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디벗 예산중 264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디벗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미 지난 '22년도 디벗 편성 예산도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요청한 디벗 관련 예산만 3,194억 8,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한 조건인지 원점에서 검토하여 연도중 집행 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77〉 2023년도 디벗 스마트기기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계		45,225,123	26,471,721
1회추경	스마트기기보급(중)	19,728,615	975,213
2회추경	스마트기기조달수수료 (디지털선도학교)	117,533	117,533
	충전함조달수수료 (디지털선도학교)	7,424	7,424
	스마트기기보급 (디지털선도학교)	23,792,051	23,792,051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 (디지털선도학교)	1,579,500	1,579,500

-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p.1439 [명시이월조서]  
 - 사업명: '24학년도 디벗 환경 구축  
 - 사유: 계약추진 행정절차 및 검토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능

□ 누리과정지원

-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84)
- **유아보육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87)
- **유아학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91)
- **유아학비부대경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95)
-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98)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만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4,786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8〉 누리과정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 감 륜
	계	478,684	494,910	△16,226	△3.3
①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2,988	2,945	42	1.4
②	유아보육료	250,019	280,569	△30,550	△10.9
③	유아학비	224,145	209,930	14,215	6.8
④	유아학비부대경비	84	246	△162	△65.9
⑤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1,447	1,218	229	18.8

○ 누리과정중 ①**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은 만3~5세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국적 유아에게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9억 8,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②유아보육료 및 ③유아학비는 금년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만을 재원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였으나, '24년도 본예산안은 특별회계전입금 4,507억 2,000만원에 자체재원 234억 8,400만원이 추가된 4,741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79〉 유아보육료중 5세보육료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4 년 도		예			
					산	출	기	초	안	
					산	출	기	초	금	액
5	세	보	육	료						80,401
		방	과	후	과	정	비	자치단체등이전	70,000원×16,223명×12월	13,627
		보	육	료				자치단체등이전	280,000원×16,223명×12월	54,509
		처	우	개	선	비	등	자치단체등이전	13,000원×16,223명×12월	2,530
		보	육	료	(유	보	통	합)	50,000원×16,223명×12월	9,733

〈표 2-80〉 유아학비중 5세유아학비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4 년 도		예				
					산	출	기	초	안		
					산	출	기	초	금	액	
5	세	유	아	학	비					91,942	
		유	아	학	비	(공	립)	학교회계전출금	100,000원×6,050명×12월	7,260	
		방	과	후	과	정	비(공	립)	50,000원×4,967명×12월	2,980	
		유	아	학	비	(사	립)	학교회계전출금	280,000원×16,801명×12월	56,451	
		방	과	후	과	정	비(사	립)	70,000원×13,738명×12월	11,539	
		유	아	학	비(공	립-유	보	통	합)	50,000원×6,050명×12월	3,630
		유	아	학	비(사	립-유	보	통	합)	50,000원×16,801명×12월	10,080

- 자체재원 234억 8,400만원은 '만5세'의 ②유아보육료 97억 3,300만원과 ③유아학비 137억 1,000만원으로 유아당 5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24년도에는 '만5세'의 ②유아보육료가 유아당 363,000원 에서 413,000원으로, ③유아학비는 유아당 공립 150,000원 에서 200,000원, 사립 35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인 것으로 검토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만5세 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고, 지난 10월,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를 통해 고시한 금액 외 추가 소요 경비를 기준재정 수요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3.11.16)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23.11.21)을 시행한 바,
  - '24년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6년도까지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하여 '25년도 만 4세, '26년도 만 3세까지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특별회계전입금 4,507억 2,000만원의 경우, '24년 1월경 교육부의 확정통보에 따라 지원기준 등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써 회계연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액이 증·감 조정될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지난 '22년 12월,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요인은 순연된 것으로 사료됨
- ④유아학비 부대경비는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및 유아학비지원시스템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납부 등을 위해 8,400만원, ⑤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되는 유아학비로 14억 4,700만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생태체험교육** (사업별 설명자료, p.812)

- 초등교육과 소관 **생태체험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유학의 경우, 당초('21년~'22년)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기금전출금(10억원)이 전액 감액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삭제되어 '24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한 바, '24년도 본예산에는 ①**농촌유학**과 ②**생태체험교육교류사업운영**의 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7억 5,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1〉 생태체험교육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계		752	811	△59	△7.3
농 촌 유 학		730	759	△28	△3.8
생 태 체 험 교 육 교 류 사 업 운 영		21	52	△30	△58.1

- **농촌유학**은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서울 공립초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유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유학지원금 자치단체등이전 7억 2,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2〉 농촌유학 중 농촌유학지원금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농 촌 유 학 지 원 금	722,600	○ 자치단체등이전 (300,000원×180명×12개월) +(500,000원×100명×1회) +(200,000원×10명×12개월)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p.813

- 농촌유학의 사업 편성 기간을 당해연도가 지난 '25년도 2월까지 예산집행 기간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법령이 준수하는 기간만큼 소요예산이 삭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난 7월,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어 의장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함에 따른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인용으로 폐지조례안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당장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농촌유학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료되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결정된 후 예산편성 및 사업폐지나 재개 여부 결정될 사안으로 사료됨

□ **돌봄교실운영**

- **돌봄서비스연계강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21)
- **초등돌봄교실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25)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29)

- 초등교육과 소관 **돌봄교실운영**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420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표 2-83〉 돌봄교실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 0 2 4 년 도 예 산 안 ( A )	2 0 2 3 년 도 최 종 예 산 ( B )	증 감 ( A - B )	증 감 륜
계	42,072	48,127	△6,055	△12.6
① 돌봄서비스연계강화	1,537	1,457	80	5.5
②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39,484	46,670	△7,185	△15.4
③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지 원	1,050	-	1,050	순증

- ①**돌봄서비스연계강화**는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간 연계로 지역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계협력강화** 300만원, **지역연계돌봄운영지원** 9,000만원, **학교돌봄터운영협력** 14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임

〈표 2-84〉 돌봄서비스연계강화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 (A-B)	증감률
계	1,537	1,457	80	5.5
지역사회연계협력강화	3	6	△2	△42.8
지역사회연계협력강화 (특별교부금)	-	6	△6	△100
지역연계돌봄운영지원	90	-	90	순증
학교돌봄터운영협력	1,444	1,445	△1	△0.1

- 사업내용중 **지역연계돌봄운영지원**의 경우, 자치구 공모·선정 후 돌봄교실 10실에 총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늘봄학교 대응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은 9,000만원을 순증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학교돌봄터운영협력**의 경우, '21년 9월부터 중구 소재 학교돌봄터(9교, 28실)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교육청과 예산분담 및 연계협력을 통해 초등학교내에서 돌봄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 1실당 2교사제, 돌봄보안관 1명, 급식·간식 무상 지원 등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24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25%에서 0%로 미반영하고 예산을 보조하지 않아 교육청의 부담비율은 금년도(25%) 보다 100% 상향한 50%로 변경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5〉 학교돌봄터운영협력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1,444,149	
학 교 돌 봄 터 운 영 비 (분담금)	1,000,884	○ 자치단체등이전 71,491,710원×28실×50%
학 교 돌 봄 터 운 영 비 추 가 지 원 금 <sup>주 1)</sup>	443,265	○ 자치단체등이전 1,444,149,000원 <sup>주2)</sup> -1,000,884,000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23

※ 주1) '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서에도 학교돌봄터운영비추가지원으로 9억 5,300만원을 편성함

주2)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 소요경비(9교 28실) : 1,444,149천원

- ②초등돌봄교실운영은 초등돌봄교실담당자연수 3,200만원, 초등돌봄교실운영 394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86〉 초등돌봄교실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 0 2 4 년 도 예 산 안 ( A )	2 0 2 3 년 도 최 종 예 산 ( B )	증 감 ( A - B )	증 감 륜
계	39,484	46,670	△7,185	△15.4
초 등 돌 봄 교 실 담 당 자 연 수	32	114	△81	△71.6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39,452	46,556	△7,104	△15.3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돌봄교실의 ①간식비, ②운영비, ③환경개선비, ④저소득층 방학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였으나, '23년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무상”으로 지급한 바, '24년도 본예산안에도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394억 5,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년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별도로 제·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23년 12월 현재까지 법령상 근거를 정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조례」에 명시된 교육복지사업이며 ㉡국정과제 사업이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간식비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것이고,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고 늘봄학교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안내하였기에 간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 사업별설명자료에 ㉦국정과제8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교육감 3기 공약을 “사업근거”로 기재한 바, 사업별 설명자료에 열거된 사업근거로는 간식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조례」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용어와 절차를 규정하는 포괄적 성격의 조례라는 점에서 간식비 무상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23년 1월 수립된 교육부의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법령 제정 전 방과후 활동에 대한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23년도 하반기까지 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도 교육청도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음에도
  - '23년 12월 현재까지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도 교육청도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에도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바 없음

- 그 외에도 ㉔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㉕교육감 3기 공약에 열거된 사항이라하여 교육부가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을 통해 시·도 교육청도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필요함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음에도 '23년 4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이후 현재까지도 간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선택하기 보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당시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부의 관련 추진방안을 부정하는 행정행위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치한 바 없고, 동일한 문제를 내재한 채 소요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어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절차를 이행한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표 2-87〉 '24년도 초등돌봄교실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39,452,130	
돌봄교실간식비	19,200,000	○ 학교회계전출금 2,500원×32,000명×20일×12월
돌봄교실운영비	18,582,130	○ 학교회계전출금 (8,554,000원×1,845실)+(8,000,000원×350실)
돌봄교실환경개선비	795,000	○ 학교회계전출금 (15,000,000원×17실)+(30,000,000원×18실)
저소득층지원	875,000	○ 학교회계전출금 7,000원×2,500명×50일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27

- ②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중 아침·방학중·저녁돌봄 운영비를 지원하는 돌봄운영다양화지원 10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편성이 필요한 교육청 부담분 30%를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8〉 '24년도 돌봄운영다양화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학 교 회 계 전 출 금	1,050,000	○ 학교회계전출금 7,000,000원 <sup>주1</sup> ×500교×30%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30

※ 주1) 아침돌봄운영비(3,000천원), 방학중돌봄운영비(2,000천원), 저녁돌봄운영비(2,000천원)

□ **인사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85)

- 초등교육과 소관 **인사관리**는 교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교원인사관리 등의 지원을 위해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89〉 인사관리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 0 2 4 년 도 예 산 안 ( A )	2 0 2 3 년 도 최 종 예 산 ( B )	증 감 ( A - B )	증 감 륜
계	4,559	3,251	1,308	40.2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	50	59	△8	△14.1
<b>교 권 보 호</b>	<b>2,638</b>	<b>1,210</b>	<b>1,427</b>	<b>117.9</b>
교 사 전 보	262	360	△98	△27.3
교 원 복 지	210	210	-	-
교 원 성 과 상 여 금	0.2	0.4	△0.2	△50.0
교 원 자 격 관 리	12	2	10	476.2
사 립 교 원 인 사 관 리	41	36	4	12.6
유 초 인 사 관 리	139	145	△5	△3.9
중 등 교 사 전 보 ( 고 )	12	23	△11	△49.8
중 등 인 사 관 리	1,192	1,201	△9	△0.8

- **교권보호**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 범위 확대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 소송비를 선지원하기 위해 ①교원안심보험(공제)가입 10억원, ②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인건비·

보험료 8억 2,200만원, ③전문상담사 인건비·보험료, ④교원치유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지원비, ⑤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26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최종예산(12억 1,000만원) 보다 117.9%, 1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②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인건비·보험료 8억 2,200만원의 경우, '24년도 본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예산이며, ①교원안심보험(공제)가입 10억원은 금년도(2억 5,000만원) 보다 7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 교원이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통령 지시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회복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68)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소관 **교육회복지원**은 '젠 C세대(Generation Covid)' 교육 공백에 따른 전반적인 학력 저하 및 격차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금년도(698억 7,700만원) 보다 △617억 9,400만원 감액한 80억 8,300만원을 자체재원만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90〉 교육회복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 0 2 4 년 도 예 산 안 ( A )	2 0 2 3 년 도 최 종 예 산 ( B )	증 감 ( A - B )	증 감 률
계	8,083	69,877	△61,794	△88.4
교육회복체계적추진지원	4	-	4	순증
교육회복체계적추진지원 ( 특 별 교 부 금 )	-	4	△4	순감
학 습 지 원 튜 터	8,078	-	8,078	순증
학 습 지 원 튜 터 ( 특 별 교 부 금 )	-	25,213	△25,213	순감
교육회복현장평가단운영 ( 특 별 교 부 금 )	-	6	△6	순감
랜 선 야 학 ( 특 별 교 부 금 )	-	1,441	△1,441	순감
사회성회복또래신체활동활성화 ( 특 별 교 부 금 )	-	6,500	△6,500	순감
아 침 책 산 책 프 로젝 트 ( 특 별 교 부 금 )	-	2,512	△2,512	순감
중등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 ( 특 별 교 부 금 )	-	7,040	△7,040	순감
중등사회성결손회복프로그램 ( 특 별 교 부 금 )	-	1,720	△1,720	순감
중 등 토 닥 토 닥 키 다 리 샘 ( 특 별 교 부 금 )	-	4,000	△4,000	순감
초 등 기 초 학 력 키 다 리 샘 ( 특 별 교 부 금 )	-	5,000	△5,000	순감
초 등 또 래 활 동 프 로 그 램 ( 특 별 교 부 금 )	-	1,710	△1,710	순감
초 등 점 프 업 프 로 그 램 ( 특 별 교 부 금 )	-	10,260	△10,260	순감
초중고특수학교현장체험학습지원 ( 특 별 교 부 금 )	-	4,041	△4,041	순감
특수학교또래활동프로그램 ( 특 별 교 부 금 )	-	430	△430	순감

- 사업내용중 '23년도에 신규 편성된 **학습지원튜터**는 당초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24년도부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로 80억 7,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립초를 제외한 초·중·고 희망학교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및 학습보충 지도를 위한 보조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확인됨

〈표 2-91〉 '24년도 학습지원튜터 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학 습 지 원 튜 터	8,078,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전출금</li> <li>- 공립중고) 23,900,000원×78명 =1,864,200</li> <li>- 공립초) 23,900,000원×210명=5,019,000</li> <li>- 사립중고) 23,900,000원×50명 =1,195,000</li> </ul>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70

- **교육회복지원**은 '21년도에 신설된 이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편성된 사업이나, '24년도 본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내시 지연에 따라 교육청이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4년도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9억 3,000만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

#### 4) 평생진로교육국

##### □ 대안교육기관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02)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대안교육기관지원**은 '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안정성 제고와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중단 없는 학업 지원을 위하여 62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2억 500만원) 보다 60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2-92〉 대안교육기관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계	6,210	205	6,004	2,928.4
①	대안교육기관등록 및 지원 사업 운영	33	205	△172	△83.9
②	대안교육기관지원	6,177	-	6,177	순증

- ①대안교육기관등록 및 지원사업 운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안정성 제고에 대한 행정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 3,3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②대안교육기관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 및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본예산안에 자체재원으로 61억 7,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②대안교육기관지원은 '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2년 10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23년도 예산안중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원을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전입 받아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24년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중 입학준비금(159억 1,400만원)만 서울특별시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3〉 2024년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 감 (B-A)	추진목표
계		29,079	15,914	△13,165	
일반교육경비		3,036	-	△3,036	
	①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	△600	
	②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	△660	
	③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	△1,000	
	④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776	-	△776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7,268	15,914	△1,354	195,000명
대안교육기관지원		7,000	-	△7,000	
특별교육경비		1,775	-	△1,77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사업설명서(평생교육국)」, p.322

- 아울러 ②대안교육기관지원 소요예산중 민간이전비 61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된 59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후 교사 인건비 및 교육 활동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4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94〉 ‘대안교육기관지원’ 중 민간이전 목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4 년 도 예 산 안	
		산 출 기 초	금 액
계			6,150
급 식 비 지 원	민 간 이 전	6,000원×1,250명×180일=	1,350
인 건 비 및 교 육 활 동 운 영 비 지 원	민 간 이 전	120,000,000원×40기관=	4,800

□ 무상급식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77)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무상급식은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식품관리비, 인건비 소요액 중 교육청 재원 분담금만을 편성한 것으로, '23년도 최종예산(4,100억 1,900만원) 보다 0.9%, 37억 2,700만원 증액한 4,137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95〉 무상급식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A-B)	증 감 률 (C/B)
	계	413,747	410,019	3,727	0.9
①	(아침이 있는 학교 생활	40	-	40	순증
②	식기류 렌탈세척운영	380	-	380	순증
③	(유치원) 식품관리비	22,503	22,652	△148	△0.7
④	(유치원) 인건비	17,068	17,052	16	0.1
⑤	식품관리비	298,551	287,940	10,610	3.7
⑥	인건비	74,321	80,169	△5,848	△7.3
⑦	조리종사원 대체인력인건비	881	2,204	△1,322	△60.0

○ ①아침이 있는 학교생활과 ②식기류 렌탈세척 운영은 '24년도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 ①아침이 있는 학교생활의 경우,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학교가 조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2교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조식 제공 및 조식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발의되고, 소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금번 정례회 의사 일정에는 관련 의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②식기류 렌탈세척 운영은 조리실 업무 경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용역으로 운영하며 '23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후, '24년도 신규사업으로 10교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으로 조리인력의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 무상급식 재원의 경우, 지난 8월, '24년도 식품비·관리비·인건비 단가 인상과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간(5:3:2) 재원 분담을 협의하고, '24년도 본예산 안에 식품관리비와 인건비를 유치원급식과 학교급식으로 구분하여 교육청 재원 분담금을 편성한 바,

- '24년도 유치원 원아 6만 1,915명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급식 총소요액 791억 4,500만원을 교육청 395억 7,200만원, 서울시 237억 4,300만원, 자치구 158억 2,900만원으로 분담할 계획이며, 교육청 부담분 395억 7,200만원에 대하여 ③(유치원)식품관리비 225억 300만원과 ④(유치원)인건비 170억 6,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96〉 '유치원급식' 재원부담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계	79,145	39,572	23,743	15,829
공립유치원	10,970	5,485	3,291	2,194
사립유치원	68,174	34,087	20,452	13,634

- '24년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 78만 6,463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총소요액은 금년도(8,890억원) 보다 △18.1%, △1,609억 5,900만원 감소된 7,280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표 2-97〉 '23년~'24년 '학교급식' 자원부담 소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 감 (C=A-B)	증 감 륜 (C/B)
총	소	728,041	889,000	△160,959	△18.1
분담액 (100%)	⑧교육청(50%)	355,168	343,379	11,789	3.4
	⑨서울시(30%)	213,100	206,027	7,073	3.4
	⑩자치구(20%)	142,067	137,351	4,716	3.4
⑪교육청 별도부담 인건비		17,705 <sup>주1)</sup>	202,240 <sup>주2)</sup>	△184,535	△91.2
교육청부담 계(⑧+⑪)		372,873	545,620	△172,747	△31.7
실 제 분 담 륜		교육청 51% 서울시 29% 자치구 20%	교육청 61% 서울시 23% 자치구 16%	교육청 △10%p 서울시 6%p 자치구 4%p	

※ 주1) 공립위탁조리교 조리종사원인건비: 38,742천원×457명

※ 주2) 2023년 공립학교 조리(실무) 인건비 100% 교육청 자체재원 부담

(국·사립학교, 급식보조인력은 기존대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5:3:2 재원 부담)

-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청(3,551억 6,800만원), 서울시(2,131억원), 자치구(1,420억 6,700만원)가 재원을 5:3:2로 분담하나, 공립위탁 조리교 조리종사원 인건비(177억 500만원)는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 교육청 부담분(3,728억 7,300만원)에 대하여 ⑤식품관리비 2,985억 5,100만원과 ⑥인건비 743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24년도 학교급식 계획에 따르면, '24년도의 학교급식 총소요액이 금년도(8,890억원) 보다 △18.1%, △1,609억 5,900만원 감소한 7,280억 4,100만원으로, 교육청의 학교급식 부담비율도 금년도(61%) 보다 10%p 낮아진 51%로 확인되는 바,
- 금년도까지는 교육청이 무상급식중 학교급식에 '공립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24년도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인 건비중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로 해당 사업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

무상급식중 학교급식에는 ‘공립학교 조리종사원인건비’를 제외한 국·사립학교 조리종사원, 공립위탁조리교 조리종사원 및 급식보조인력 인건비만 편성되어 소요예산과 분담비율이 낮아진 것과 같은 착시요인이 내재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무상급식중 학교급식 예산상의 분담비율은 명목상 낮추어진 것이나, 교육공무직원인건비중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에 편성된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4,838명분, 1,907억 9,700만원(9,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공립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한 실제 학교급식 총소요액은 9,188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8,890억원) 보다 298억 3,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2-98〉 공립 조리종사원 인건비 포함 여부에 따른 학교급식 분담비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 감 (C=A-B)	증 감 륜 (C/B)
		공립 조리종사원 인건비 포함	공립 조리종사원 인건비 포함 (무상급식 편성 예산)		
총	소	918,838	889,000	29,838	3.4
분담액 (100%)	교육청(50%)(A)	355,168	343,379	11,789	3.4
	서울시(30%)	213,100	206,027	7,073	3.4
	자치구(20%)	142,067	137,351	4,716	3.4
교육청 별도부담 인건비(B)		17,705 <sup>주1)</sup>	202,240	△184,535	△91.2
교육공무직원통합인건비(C)		190,797 <sup>주2)</sup>	-	190,797	순증
교육청부담 계(A+B)		563,670	545,620	18,050	3.3
실 제 분 담 륜		교육청 61% 서울시 23% 자치구 16%	교육청 61% 서울시 23% 자치구 16%		

※ 주1) 공립위탁조리교 조리종사원인건비 177억 500만원

주2) 교육공무직원통합인건비로 이관한 조리종사원인건비 1,907억 9,700만원

## 5) 교육행정국

### □ 직속기관신증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03)

- 학교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신증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인 **강서도서관의 가양분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46억원)보다 54.7%, 25억 1,400만원 증액된 71억 1,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은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건립계획한 주민·청소년 문화시설로 당초 '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4년 10월 개관으로 계획이 변경된 바, 자체 재정투자심사시 제시된 조건을 이행완료 것으로 확인됨

〈표 2-99〉 2024년도 직속기관신증설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감률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설립		7,114	4,600	2,514	54.7

###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34)

-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도(1조 1,964억 800만원) 보다 0.9%, 110억 2,500만원 증액된 1조 2,074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00〉 2024년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감률
합	계	1,207,434	1,196,408	11,025	0.9
	사립중학교	316,787	314,057	2,730	0.9
	사립고등학교	816,997	809,370	7,626	0.9
	사립특수학교	73,649	72,980	668	0.9

-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교원 수 감소(△302명)에도 불구하고, ①보수인상률(2.5%), ②지원대상교 증가(2교), ③일반교 전환 자사고 인건비 반영으로 '23년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증가된 지원대상 2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개정('22년 11월)되어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대안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서 '23년도중 사립 대안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건비재정결함보조 대상 사립 교직원수를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16,639명(교원 14,775명, 사무직원 1,864명)'으로 기재하고, '예산(안) 개요'에는 '17,021명(교원 14,885명, 사무직원 2,136명)'으로 동일 사업에 대한 대상인원을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 산출내역 및 편성규모 등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제시하여 시의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01〉 2023년 대비 2024년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산출내역

(단위 : 교, 명)

구 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사무직원수	
	'24년	증감 <sup>주1)</sup>	'24년	증 감	'24년	증 감	'24년	증 감	'24년	증 감
합 계	300	2	7,225	45	166,915	5,358	14,775	△302	1,864	7
사 립 중	110	2	2,041	△3	47,988	△842	3,802	△97	538	21
사 립 고	172	-	4,790	50	116,721	6,233	10,247	△201	1,026	28
사립특수	18	-	394	△2	2,206	△33	726	△4	120	△42

※ 주1) '23년도 대비 '24년도 비교 증감 수치

자료근거 : '24년도 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635, '23년도 설명자료 p.1883

〈표 2-102〉 2024년도 예산(안) 개요중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비 고
			금액	비율	
인 건 비 재 정 결 함 보 조	1,207,434	1,196,408	11,025	0.9	
교 원 (14,885명)	1,056,438	1,090,755	△34,317	△3.2	○ '23년 인건비 집행액 기준 추계 반영 ○ 보수인상률 반영(25%) 및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차액 반영 ○ 사무직원 신규 채용 예정자 인건비 반영
사 무 직 원 (2,136명)	150,996	105,654	45,342	42.9	

※ 자료근거 : '24년도 교육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10

□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54)

- 학교지원과 소관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은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비로 금년도(32억 7,700만원) 보다 △85.0%, △27억 8,700만원 감액된 4억 9,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24년도 지원대상 통합학교 4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2억 4,000만원과 '긴급현안사업지원비(학교회계전출금)'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3〉 2024년도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감률	편 성 내 역
합	계	490	3,277	△2,787	△85.0	
	공 립 초	110	645	△535	△82.9	○통합학교 2교 지원금 (성수초,장안초)
	공 립 중	-	561	△561	순감	
	공 립 고	130	604	△474	△78.5	○통합학교 2교 지원금 (자운고, 휘경공고)
	공 립 중 고	-	150	△150	순감	
	공사립초중고	250	-	250	순증	○긴급현안사업지원
	사 립 고	-	1,316	△1,316	순감	

- '긴급현안사업지원비'는 '24년도에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적정규모육성 학교의 긴급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하나,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바,

- ‘긴급현안사업비’의 경우, ’24년도 예산안 제출시까지도 대상학교 및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긴급현안지원을 사유로 일정액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의 체계적 관리 및 명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지침’의 지원 절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방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도 편성하고 있음에도 긴급현안사업지원을 명목으로 별도의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실증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58)

- 학교지원과 소관 **교실증축**은 과밀학급 해소 및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비 및 내부비품비로 금년도(150억 8,400만원) 보다 △32.5%, △49억 600만원 감액된 101억 7,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한서초, 잠실중, 해누리중에 대해서는 일시적 과밀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사 임차료[3년 임대(2차년도)]를 편성 요청하고, 가재울초는 설계공모를 위한 설계공모보상금과 설계비, 은로초와 대방초는 교실증축 시설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04〉 2024년도 「교실증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감률	편성내역
합계	10,178	15,084	△4,906	△32.5	
공립유	-	454	△454	순감	
공립초	9,681	11,236	△1,555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한서초 모듈러임차료</li> <li>○ (서부)가재울초 설계공모보상금, 설계비</li> <li>○ (동작관악)은로초 시설비</li> <li>○ (남부)대방초 시설비</li> </ul>
공립중	497	3,393	△2,896	△8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송파)잠실중 모듈러 임차료</li> <li>○ (강동송파)해누리중 모듈러 임차료</li> </ul>

- 교실증축 예정 학교 중 가재울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가 11월 27일, 심의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86)

○ 교육재정과 소관 **재산관리일반운영비**는 ①공유재산심의회의운영, ②유휴시설물관리, ③재산관리 제반비용, ④학교시설예약시스템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10억 4,900만원) 보다 56.7%, 5억 9,500만원 증액된 16억 4,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내역중 ②**유휴시설물관리**는 학교 이전 및 폐교, 휴교로 인한 유휴시설물을 관리하는 경비로 금년도(5억 5,400만원) 대비 117.1%, 6억 4,900만원 증액된 12억 300만원을 편성 요청 한 바, 관리하여야 하는 폐교(3교), 휴교(5교)가 증가함에 따라 총12개 유휴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과 시설관리용역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5〉 2024년도 「재산관리일반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륜
합	계	1,644	1,049	594	56.7
	① 공유재산심의회의운영	16	13	3	23.1
	② 유 휴 시 설 물 관 리	1,203	554	649	117.1
	③ 재 산 관 리 일 반	399	451	△52	△11.5
	④ 학교시설예약시스템유지관리	25	30	△5	△16.7

- **유휴시설물관리**는 폐교·휴교된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이나, 향후 학생 수 감소와 노후교사 개축, 학교인근 재개발에 따른 학교시설의 폐·휴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휴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최소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93)

○ 교육재정과 소관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은 스쿨매니저 시범운영 및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83억 6,000만원) 보다 △74.9%, △62억 6,100만원 감액된 20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내역중 스쿨매니저 시범운영은 지난 '22년 4월, 제306회 임시회를 통해 도입이 검토되어 서울시교육청이 '23년 7월, 제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 바, 시설개방 학교의 안전·보안을 위한 시설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자치구와 분담(5:5)하는 사업임
-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환류결과에 따라 확대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나, '24년도에는 금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3개구(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에 대해 우선 추진할 것으로 확인됨

〈표 2-106〉 2024년도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륜	편 성 내 역
합	계	2,098	8,360	△6,261	△74.9	
	공 사 립 학 교 운 영 비 지 원	2,098	8,360	△6,261	△74.9	○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9교[3개구 3교]) : 2억 9,800만원 ○ 학교시설개방 인센티브: : 1억 8,000만원

□ **급식시설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32)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급식시설개선**은 금년도(246억 100만원) 보다 72.7%, 178억 9,500만원 증액된 424억 9,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금년도에 시범 추진한 ①**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7년도까지 총1,036교에 대해 3,859억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인 바, '24년도에는 54교 소요액 350억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 ②**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안전이 시급한 사업 위주로 축소하여 금년도 (246억 100만원) 보다 △69.5%, △171억 500만원이 감액된 74억 9,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07〉 2024년도 급식시설개선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감률
합	계	42,496	24,601	17,895	72.7
	① 급식실환기개선(전면)	35,000	-	35,000	순증
	② 급식시설개선	7,496	24,601	△17,105	△69.5

-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흙 제거 등 조리종사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학년도 겨울방학중('23년 12월 ~ '24년 1월) 44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선 후 시설 성능을 확인하여 기존 급식실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확인됨

〈표 2-108〉 2023~2027년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예산 소요액

(단위 : 교, 억원)

구	분	대상 학교수			소요액(억원)			비 고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합	계	387	649	1,036	2,579	1,280	3,859	
	2023년 <sup>주1)</sup>	-	44	44	-	80	80	시범사업
	2024년	54	-	54	350	-	350	전면개선
	2025년	111	201	312	743	400	1,143	전면, 부분
	2026년	111	202	313	743	400	1,143	전면, 부분
	2027년	111	202	313	743	400	1,143	전면, 부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1518('23. 9. 1)

주1) '23년도 예산액은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체육건강예술평과 소관)에 편성('23. 7월 이관)

□ **노후시설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49)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노후시설개선**은 학교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비로 금년도(1조 857억 4,600만원) 보다 △55.4%, △6,018억 6,900만원 감액된 4,838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각급학교에서 요구한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거쳐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학교단위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우선순위 없이 편성된 성동고와 창덕여고의 경우, 성동고 정보센터동 수영장 보수(19억 4,900만원) 등 63개 사업(138억 5,000만원)은, 긴급안전을 사유로 우선순위 없이 편성되었고, 창덕여고 교사동 화장실 보수(6억 1,300만원) 등 122개 사업(238억 8,900만원)은,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노후시설개선**은 개선대상 분야에 따라 17개 단위사업으로 분류되는 바,

- ①**화장실개선**은 내용연수가 15년이 지난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75건, 618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 하였음
- ②**전기시설개선**은 88건, 102억 5,500만원을 편성 요청 한 것으로 노후전기시설개선(45건 66억 4,400만원), LED조명 임차사업(43건 36억 1,100만원)으로 구분됨
- ③**냉난방개선**은 185건, 683억 2,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노후 냉난방개선(82건, 339억 7,500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년 6월)에 따른 GHP(가스열펌프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103건, 343억 5,400만원)으로 구분됨
- ④**창호개선**은 45건, 1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외부창호, 중연창, 교실출입문 개선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됨
- ⑤**외부환경개선**은 배수로, 옹벽, 석축, 담장, 포장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4건, 60억 5,800만원을 편성 요청함
- ⑥**기타사업**은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운동장 환경개선(100억원),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22억 5,000만원), 냉난방기 화학세척(21억 6,700만원), 학교수목유지관리(12억 6,000 만원) 등 85건, 546억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109〉 2024년도 「노후시설개선」 편성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 A - B )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증감률
합계	943	483,876	4,328	1,085,746	△3,385	△601,869	△55.4
① 확장실개선	75	61,825	180	56,865	△105	4,960	8.7
② 전기시설개선	88	10,255	199	27,844	△111	△17,588	△63.2
③ 냉난방개선	185	68,329	440	92,937	△255	△24,607	△26.5
④ 창호개선	45	12,118	362	116,253	△317	△104,134	△89.6
외벽개선	14	14,712	125	80,230	△111	△65,518	△81.7
소방시설개선	46	11,755	77	16,601	△31	△4,845	△29.2
방수공사	97	21,717	289	40,388	△192	△18,671	△46.2
바닥개선	21	12,856	177	63,508	△156	△50,652	△79.8
도장공사	38	5,104	221	22,966	△183	△17,862	△77.8
⑤ 외부환경개선	44	6,058	164	18,169	△120	△12,110	△66.7
⑥ 기타사업	85	54,654	1,594	268,045	△1,509	△213,391	△79.6
장애인편의시설	89	17,510	188	38,519	△99	△21,008	△54.5
내진보강	3	87,397	3	60,790	-	26,606	43.8
샌드위치판넬제거	12	1,474	14	1,759	△2	△285	△16.2
드라이비트해소	29	10,541	167	72,652	△138	△62,111	△85.5
정밀점검	69	24,684	125	29,514	△56	△4,830	△16.4
석면제거	3	62,881	3	78,700	-	△15,818	△20.1

-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단위사업 종류별로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공사 및 잦은 공사로 인해 사업효율성 저하와 학생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지난 '22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방식을 도입하여 ①학교별로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공사횟수를 감축하고, ②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 주기로 변경하여 1회 조사('23년 4월)로 3년간('24~'26년도) 연차별 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한 바,
  - 우리 위원회에서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제도개선을 통해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일괄 해소라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사업이 누락될 경우 3년을 기다린 다음 신청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학교업무 담당자나 기관담당자에게 신청 방법이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히 전달·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중 내구연한이 지났으나 미신청한 사업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미신청사유를 확인하는 등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학교가 연중 공사현장화되는 사례는 감소시키고 있으나, '23년 10월말 기준 기 편성된 예산 중 42.0%만 지출원인행위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의 한정된 공사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전 공정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린스마트스쿨**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06)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금년도(337억 7,100만원) 보다 87.3%, 294억 9,400만원 증액된 632억 6,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린스마트스쿨은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바,
- '24년도에는 총26교(초 17교, 중 5교, 고 4교)에 대한 시설비, 모듈러 임차료, 용역비 등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편성 요청한 대상사업은 ①학부모 동의 및 사전기획, ②공공건축심의, ③재정투자심사 사업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10〉 2024년도 「그린스마트스쿨」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감률	편 성 내 역
합 계	63,265	33,771	29,494	87.3	
공 립 초 (17교)	47,496	33,236	14,260	42.9	○ 구산초, 당곡초, 동명초, 동신초, 면중초, 보광초, 북좌초, 불광초, 오류초, 용두초, 유현초, 인현초, 화곡초
공 립 중	-	109	△109	순감	
사 립 중 (5교)	7,534	225	7,308	3,248.0	○ 광운중, 고대부중, 대광중, 동성중, 영파여중
사 립 고 (4교)	8,235	200	8,034	4,017.0	○ 동성고, 용문고, 장안여고, 중앙여고

- 그러나 그린스마트스쿨 예정 학교 중 용두초, 불광초, 보광초, 인현초, 동명초, 동신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노후교사개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12)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노후교사개축**은 금년도(132억 8,600만원) 보다 66.7%, 88억 6,800만원 증액된 221억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예정 학교 중 **고은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역촌유 노후교사개축**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지난 '22년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미 의결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23년 11월 심의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시 정확한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시의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11〉 2024년도 「노후교사개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 감 률	편 성 내 역
합	계	22,154	13,286	8,868	66.7	
	공립유	4,086	5,384	△1,297	△24.1	○ 역촌유
	공립초	9,282	1,379	7,903	573.1	○ 고은초, 신남초, 노원초
	공립중	8,617	6,312	2,305	36.5	○ 종암중
	긴급시설보수비	120	210	△90	△42.9	○ 공립4교 (긴급시설보수산량학교)
	사전기획용역	48	-	48	순증	○ 도솔학교

## 6) 직속기관

### □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41)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은 ①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②시스템 구축 운영비(뉴쌤), ③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 학습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 금년도(124억 2,800만원) 보다  $\Delta 77.1\%$ ,  $\Delta 95$ 억 8,300만원 감액한 28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112〉 2023년도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증감률
합	계	2,844	12,428	$\Delta 9,583$	$\Delta 77.1$
①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08	1,288	$\Delta 879$	$\Delta 68.2$
②	시스템 구축 운영비 (뉴쌤)	919	-	919	순증
	시스템 구축비 (뉴쌤 및 AI)	-	2,602	$\Delta 2,602$	순감
	시스템 운영비 (뉴쌤 및 AI)	-	727	$\Delta 727$	순감
③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 학습 통합플랫폼	1,516	7,809	$\Delta 6,293$	$\Delta 80.5$

-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중 ①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23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금번 예산안에서는 추가적인 플랫폼 개선 및 콘텐츠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4억 800만원)를 편성 요청한 것임
-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중 ②시스템구축운영비(뉴쌤및AI)는 서울원격수업지원플랫폼 뉴쌤(new Seoul School E-learning Meta-platform) 유지 보수를 위한 운영비(9억 1,900만원)와, ③인공지능기반맞춤형교수 학습통합플랫폼은 개발비(15억 1,6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